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성 승 제



연구보고 2012-1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성 승 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orporate  
Law System with Adoption of K-IFRS

연구자 : 성승제(부연구위원)  
Sung, Seung-Je

2012.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K-IFRS는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 하에 채택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 ○ 기업활동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회계가 세계적으로 통일 추세

- 1973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제정하여 현재 대략 110여개국 이상이 채택

-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빨라지고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본조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원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임

## II. 주요 내용

### 상법상 일반원칙 조항

○ 상법은 자산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업장부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없음

- 방대한 회계기법을 전부 수용하기도 곤란하며
-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계기법을 성문법으로 묶어두기 곤란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fair and reasonable)한 회계관행’이란 일반원칙

#### □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

- 외감법은 ‘회계처리의 기준’이란 표제어 하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함(13조 1항)
  - 이 회계처리기준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모아 성문화한 행정명령

#### □ 기업법제 현황 비교와 비교법적 연구

- 상법과 외감법상 IFRS의 수용현황을 조사·검토
- 주요국에 대한 IFRS의 수용 정도 및 방법에 대한 리서치
- 110여개국 이상이 IFRS를 채택하였다고 하지만,
  - EU 등은 IASB의 IFRS를 전면수용한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채택
  - 미국은 현재의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의 사용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도 급격한 채택은 망설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도 전면수용보다는 선택적 채택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한국기업에 편리한 회계방식이 IFRS 향후 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있음

### Ⅲ. 기대효과

급속히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 검토를 위한 자료제공

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시 참조 자료 제공

▶ 주제어 : 한국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공정·타당한 회계,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s

###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 ○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 K-IFRS i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adopted by Korea Accounting Institute, which the power was entrusted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ccording to article 13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 ○ Nowadays, there is a tendency to unifying accounting, which is a communication method of corporate activitie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enacted by non-profit, private and international institut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which was founded in 1973, in London. Today, over 110 countries have adopted IFRS.
- This is due to corporate's demands for unified accounting standard, since it enables across the border capital finance an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is happening fast.

## II. Main Summary

### General Clause on Commercial Law

- Commercial law only regulates principle of valuation of assets, and it does not regulate on specific standard that is necessary for composition of commercial book
- It is difficult to accommodate vast techniques of accounting, and it is tough to codify accounting techniques which constantly keeps changing
- General norm of fair and reasonable accounting practiced

### Comparative Study and Corporate Legal System Comparison

- Overview on adoption of IFRS of Commercial Law an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 Research on degree of Adoption of IFRS of advanced countries and its methods
- Although over 110 countries adopted IFRS,
  - EU has only adopted IFRS selectively
  - U.S. seems like it wants to maintain US-GAPP system, and Japan is also hesitating drastic adoption



### III. Expected Outcomes

- Supplying materials to compatibility test of drastically adopted K-IFRS
  
- Providing references which may be helpful in amending commercial law and related regulations

► Keywords : K-GAAP, K-IFRS, IFRS, IASB, Fair and Reasonable Accounting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제 2 장 기업회계기준 일반론 .....	19
제 1 절 상법 등 법령상 회계기준 .....	19
I. 상법 등 법령과 기업회계기준의 질서 .....	19
II. 기업회계기준과 동 제정기구의 연혁 .....	26
III. 기업회계기준 현황 .....	40
제 2 절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46
I. 채택 이유 .....	46
II.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회사의 범위 .....	51
제 3 절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	59
I. 기업회계기준의 지위 .....	59
II.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검토 .....	60
III. 법규성 부여의 문제점 .....	62
IV. 맺음말 .....	65

제 3 장 기업법제 정립방안 .....	69
제 1 절 회사법과 외감법 검토사항 .....	69
I. 회사법 검토사항 .....	69
II. 상법과 외감법 정합성 검토 .....	76
제 4 장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법제도 현황 .....	81
제 1 절 미 국 .....	81
I. 회계기준 및 생성과정상의 특징 .....	81
II. 회계기준의 규범화 .....	86
III. 미국기업회계기준 제정절차와 특성 .....	91
IV. 성문화와 국제회계기준 .....	94
제 2 절 독 일 .....	97
I. 기업회계기준의 인식 .....	97
1. 상법에 의한 회계규율 .....	97
II. 독일 기업회계제도의 목표와 기능 .....	102
III. 대차대조표지침법과 회계현대화법 .....	104
제 3 절 일 본 .....	111
I. 회계제도 개선론 .....	111
II. 국제회계기준 반영 .....	113
III. 회사법상 회계기준 내용 .....	118
IV. 전 망 .....	121
제 5 장 법제개선방안 .....	123

제 1 절 법령정비 방안 .....	123
I. 정비를 요하는 부분 .....	123
제 2 절 맺음말 .....	126
참 고 문 헌 .....	12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회계처리기준 또는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모아 성문화한 행정명령<sup>1)</sup>으로 이해되어진다. 대체로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적용대상 회사를 중심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또는 후술하는 일정 업종 회사들이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91조에서도 외감법의 적용대상인 회사가 아닐지라도 원한다면 동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하며 특히 기업회계기준 중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따로이 그 적용대상 회사가 법정되어 있지만 그 역시 비적용대상 회사일지라도 자발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그만큼 적용범위가 제법 넓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들로 범위를 넓힌다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구성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정된 규모 또는 업종의 회사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위 주요 기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기업회계기준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란 어의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시피 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는 규범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담겨질 만한 회계관행이 자율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기업회계기준이 업계 등 회계

1)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제11판)」, 박영사, 2012, 228쪽

주체들의 수요나 필요에 부응하여 오랜 시간 회계주체들 간의 협의를 거쳐 생성·발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주요 외국들로부터 법률을 계수한 것처럼 기업회계기준도 현대화 또는 산업화 이후 우후죽순한 기업수요로 인하여 도입되었다. 최근 사실상 갑자기 도입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채택의 명분이 국제적 정합성을 위하여 전세계 백오십개국이 채택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회계 이용자들이 자본투자를 위한 재무비교를 위하여 국제 공통의 회계상 언어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로 주장된다. 우리나라의 국익과 발전을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 및 경과를 종합하고, 이미 도입하여 실행된 동 기준의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하며 일부 반론에 대해서도 반추해 보도록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몇 가지 법령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기업회계기준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등 상법의 회계기준에 대한 원칙조항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법정하고 다시 위임하며 적용대상 회사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외감법과 그 위임에 기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황을 검토한다(제2장). 전술한 것처럼 본래 주요국에서 업계 등 회계수요자들의 필요 또는 수요로서 발전해 온 회계처리기준이었지만 우리의 경우 주요국의 것을 모범삼아 발전 과정에서 도입하였던 것이므로 주요국의 예를 참조한다(제4장). 그를 본 받아서 우리의 기업회계기준 정립 또는 도입절차적 모습은 민간자율 및 총화의 모색으로써 생성되는 듯한 조직과 구조를 갖추었지만 아무래도 그 보다는 정책적 결단에 의하여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령간 용어의 이동이나 통일 등 개선점이 일부 발견되는 등 부조화 측면이 있기에 검토하고(제 3장), 그것과 아울러 외국법제 시사점을 종합하여 개선방안 및 개선방향을 제안(제5장)한다.

## 제 2 장 기업회계기준 일반론

### 제 1 절 상법 등 법령상 회계기준

#### I. 상법 등 법령과 기업회계기준의 질서

##### 1. 상법상 일반원칙

##### (1) 상법상 구체적 기준의 공백

상법은 자산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업장부의 작성에 필요한 그 밖의 실체적 또는 기술적 방법론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상법이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방대한 회계기법을 전부 수용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계기법을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한 성문법으로 묶어 두는 것도 비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한편 상업장부와 같이 기술하면서 회사기업 특히 물적회사는 사원·회사채권자 및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계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상법은 물적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별도로 상세한 규정(상법 제447조~468조, 제579조~583조)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sup>3)</sup> 하지만 적어도 회계에 대한 “기술적 방법론”은 두고 있지 않다.

상법이 이러한 제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을 두고 소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맡기고 있는 이유는 상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 발전되어 온 상업장부 작성에 관한 방대한 기술적 이론(회계원칙)이나 그 이론의 계속, 반복적 적용을 통하여 공고화된 회계관행을 전부 수용하기 어렵고 그러한 관행이 나날이 진보하기 때

2) 이철송, 앞의 책 226쪽.

3)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131쪽.



문에 그에 맞추어 상법을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sup>4)</sup>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한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인식되어 온 종래 상법상 회계규정도 최근 국제회계기준 채택과 맞물려서 상당부분 삭제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채택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법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를 낳고 있다.

## (2) 일반원칙 조항

상법은 제29조 제2항에서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 상법 제19조 제1항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상관습법으로서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설명된다고 한다.<sup>5)</sup>

상법 제31조는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항)고 하여 널리 상인의 자산평가의 일반적 원칙을 정하였다.

## (3) 최근 삭제된 상법상 회계규정

종래 상법은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2011.4.14 삭제전 제452조 본문)<sup>6)</sup>라고 하여 주식

4)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제5판)」, 박영사, 2009, 56쪽.

5) 이철송 윗 책 같은 쪽 각주3(近藤光男, 「商法總則·商行為(第5版補正版)」, 有斐閣, 2008, 76頁, 服部榮三, 商法總則(濟3版), 青林書院新社, 1983, 353頁 인용)

6) 2011.4.14 삭제된 상법 제452조의 각 호는 아래와 같다.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삭제 <1984.4.10>
3.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둔 바 있으며 이는 제583조 제1항 준용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준용된 바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서 삭제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계산원칙을 상법 규정으로 두었었다. 제453조(창업비의 계상), 제453조의2(개업비의 계상), 제454조(신주발행비용의 계상), 제455조(액면미달금액의 계상), 제456조(사채차액의 계상),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등이 그것이며 상법 제583조 제1항에 따라 유한회사에 준용된 규정들이 있다(상법 제583조, 제452조, 453조, 453조의2, 제457조의2).

##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는 것은 기업회계를 수행하는 주체로 하여금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되새겨보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은 불확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서 기업회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7)</sup>

---

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4.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없는 사채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채에는 제3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채에 준하는 것도 같다.
5.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다. 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기타에 대한 출자의 평가에도 같다.
6.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7) 이철송, 앞의 책, 미국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s principles)”, 영국은 “진실하고 공정한 시각(true and fair view)”, 독일은 “정규부기의 제원칙(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238 Abs. I HGB)등의 개념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 (1) 공정 · 타당성

공정과 타당이란 어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분명히 정의되지는 않고 있는데, 「공정」은 기업의 재정상태 내지 경영성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상업장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것을 뜻한다.<sup>8)</sup> ‘공정타당(fair and reasonable)’이란 본래 회계 처리의 객관성 원칙(Objectivity Principle)을 표현하는 회계용어로서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unbiased and objective)’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것이 ‘공정하고 타당한’이라는 2가지 뜻을 담은 것인지 또는 양자를 나누지 않고 ‘공정타당’이라는 한 개의 문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sup>9)</sup>

### (2) 일반적 인정

공정성 ·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회계의 이용주체간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단순히 회계이론(accounting theory)에 그치는 회계방법이 아닌 소위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le)에 다다라야 ‘일반적 인정’이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한 회계이론이 이용주체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회계원칙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sup>10)</sup> 이 회계원칙은 기업실무, 각종 법규, 회계수요자의 수요, 회계학의 이론 개발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면서 변화하고 진화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회계이론으로서 나타나고 이것이 도태 및 채택의 과정을 거쳐간다.<sup>11)</sup>

회계이론의 주된 목적은 회계처리에 대한 합의를 피하고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여지를 좁히려는 것인데, 나아가 회계원칙보다 규범성이

8) 服部榮三 앞의 책 351頁(이철송 전계서 227쪽 재인용)

9) 이태로 · 한만수 앞의 책 60쪽. 이 책은 조세법 서적이어서 곧 이어 논지를 과세 이론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인용 문구는 공통되기에 인용.

10) 이철송 앞의 책 227쪽.

11) 이철송 앞의 책

강한 것에 대하여 회계공준(accounting conventions)이라 하는데 공리(postulates), 기초적 전제(basic assumptions or underlying assumptons), 그리고 기초개념(basic concepts)으로 칭해지고 하는데 세가지 즉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명제 또는 異論 없는 가정일 것, ② 다른 명제를 도출하는 기초로서 이론구조상의 근본성을 띠고 있을 것, ③ 연역적이 아닌 귀납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명제라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회계 그 자체의 존립기반이 되는 명제, 이른바 ‘자명한 선언 또는 공리를 회계공준<sup>13)</sup>’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맥락의 표현이다.

### (3) 회계관행

위와 같은 회계원칙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일 이상 널리 적용되어 회계주체들 간에 규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될 때 회계관행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계원칙과 회계관행을 동일한 의미로 통용하기도 한다.<sup>14)</sup>

## 3. 인접 법령상 회계처리기준

### (1) 세무회계상 기업회계

한편 과세소득의 측정을 위한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부과를 위하여 그 조세 부과대상으로서의 소득이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측정에 기초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기업회계라고 부른다.<sup>15)</sup> 이처럼 과세소득은 기업회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이는 기업회계의 진실성과 정규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은 장

12) 이철송 앞의 책

13) 이태로·한만수 앞의 책 61쪽.

14) 이철송 앞의 책

15) 이태로·한만수, 앞의 책 55쪽.

부를 비치하고 그 행하는 제반거래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112조), 그 의무는 기업회계의 진실성의 원칙과 정규부기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sup>16)</sup>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불가피하게 차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일지라도 세법적 조정을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① 행정상 수요에 따라, ② 경제정책에 따라, ③ 사회정책에 따라, ④ 조세정책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다.<sup>17)</sup>

한편 위 책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대한 세법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로 행정상 수요에 따라서는 세가지 즉 납세자와 사이에 마찰이 나타나기 쉬운 항목에 대하여 세무행정을 원활하고 간편하게 실행하고자 세법 고유의 형식기준을 두거나, 납세시기를 장래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손익 귀속시기를 규율하거나, 세수를 확보하고자 회계상 비용성 있는 특정항목에 대한 손금산입을 금지하는 것 등을 꼽고 있다.

두 번째로 경제정책에 따라 네가지 예시 즉 기업구조조정, 중요산업 부문 육성책, 외화획득사업 지원, 저축장려 등을 목적으로 한 세법상 특별규정들을 꼽고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정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원조하고 그렇지 아니한 활동을 억제하고자 각각 한가지씩의 예시 즉 기부금은 꼭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 아니어도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을 허용(법인세법 제24조),

16) 이태로·한만수, 앞의 책 56쪽.

17) 이태로·한만수 앞의 책 61~63쪽.

반면 벌과금은 사업활동에 따른 것이어도 損金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을 들고 있다.

네 번째로 조세정책에 따른 세법적 조정으로서 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나온 규정들, 공평의 원칙에서 나온 규정들, 특정 조세이론이 입법화된 탓에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 (2) 외감법 상 회계처리기준

외감법 제13조 제1항은 “회계처리의 기준”이란 표제어 하에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회계처리기준은 외감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모아 성문화한 행정명령이다.<sup>18)</sup> 외감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동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처리기준은 곧 기업회계기준으로 사용된다.<sup>19)</sup>

후술하는 주권상장법인·은행·투자매매업자·보험회사·신용카드업자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항,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주권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물론 주권비상장법인도 K-IFRS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18) 이철송 앞의 책 228쪽.

19)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전문 참조(KASB가 외감법 등에 따라 제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란 문구에 괄호하고 “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라는 문구.

## II. 기업회계기준과 동 제정기구의 연혁

### 1.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연혁

1997년 11월부터 시작한 소위 IMF 외환위기는 오늘날 일과성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감이 있지만 적어도 기업회계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분수령으로 취급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원 출범한 때부터를 또 다른 분수령으로 하여 분설한다.

#### (1) IMF 외환위기 이전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추기 전의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sup>20)</sup>, 과거 기업회계원칙은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제정하였고 재무제표규칙은 재무부 고시로서 1958년에 공포되었다. 1976년 이후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구 증권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업회계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증권감독원의 감리국이, 1990년 이후에는 회계관리국이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제정과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외감법 제13조는 기업회계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증권관리위원회는 1981년에 기업회계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학 교수와 공인 회계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던 바 회계제도자문위원회는 1997년에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sup>21)</sup>

#### (2)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월 8일 개정 외감법 제13조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여 회계

20) 이하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1.1

21)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1.2

기준의 제정 주체를 변경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3월 12일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 제38조에서 기업회계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및 반기재무제표준칙의 제정·개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하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였다.<sup>22)</sup>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어, 2000년 1월 12일에는 외감법 제13조 제4항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 7월 27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sup>23)</sup>

다시금 重言하면 1998년 12월 11일 이후 기업회계기준 제정권한은 금융위원회<sup>24)</sup>가 갖게 되었다. 즉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누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게 되었다(외감법 제13조 제1항).

### (3) 한국회계기준원 이후

2000년 1월 12일 개정 외감법은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민간단체 또는 자율규제기관(Self Regulation Organization)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금융위원회는 …중략…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

22)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1.3

23)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1.4.

24) 2008.2.29 이전에는 그 명칭이 금융감독위원회였다.



체에 위탁할 수 있다”(외감법 제13조 제4항)). 이어 시행령은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에 위임하도록 규정<sup>25)</sup>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2009.12.31 외감법 시행령 개정<sup>26)</sup>에 따라 제7조의3으로 이동)한 이래 회계처리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3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6)</sup><sup>27)</sup>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sup>28)</sup>

한국회계기준원은 KASB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자문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1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KASB의 상임위원이 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sup>29)</sup> 회계기준자문위원회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정 필요성, 기존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 등의 재검토 필요성, KASB의 구조 및 운영절차, KASB의 연구과제팀의 조직과 구성 등에 대해 KASB에 조언을 하며, 기준서별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sup>30)</sup>

---

25) 외감법 시행령 7조의3 1항의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중략…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

26)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전문. 한편 동 전문은 KASB가 외감법 등에 따라 제정하는 회계처리기준(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구조와 제정 절차 등에 대한 KASB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27) 기업회계기준원의 명칭은 2006년 3월 10일 이전에는 ‘한국회계연구원’이었다.

28)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5.

29)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6 전단.

30)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6 후단.

## 2. 기업회계기준 연혁

크게 대별하면 2010년까지는 기업회계기준이 2011년 이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있다고 나누어진다.<sup>31)</sup> 여기서는 1980년을 전후로 한 번 더 나누어 구별한다.

### (1) 1980년 이전의 기업회계기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 6월의 ‘기업회계원칙’, 같은 해 7월의 ‘재무제표규칙’의 공포, 1974년 7월의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81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제정과 1998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전면 개정을 거쳐왔다.<sup>32)</sup> 이 1998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전면 개정이 K-IFRS 채택이다.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 보고의 형태로 공포한 ‘기업회계원칙’이고,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은 1958년 7월 2일 재무부 고시 제169호로 공포되었는데, 전자(기업회계원칙)는 학문적인 견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과 원리를 규정한 것 그리고 후자(재무제표규칙)은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가주의·보고식 재무제표·당기업적주의에 의한 손익계산 등이 기업회계원칙의 기본입장이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잉여금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대차대조표와 각 부속명세표로 규정하였다.<sup>33)</sup>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1970년대 초반의 기업공개촉진정책에 따라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회

31) 정찬형 앞의 책 131쪽.

32)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1.

33)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2.

계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4년 7월 18일에는 증권거래법 제126조의8(회계원칙)과 제126조의9(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대통령령 제7199호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1975년 4월 17일에는 재무부령 제1098호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sup>34)</sup>

## (2) 1980년 이후의 기업회계기준

이상을 인용한 기업회계기준에는 시간적 경과가 최근에 이룰수록 더욱 상세하고 복잡한 개정내용이 정리 및 수록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는 주로 개정 내용 등만 간추려서 이하에 인용한다.

1980년 11월 11일에는 1977년 신설된 바 있었던 증권관리위원회가 기업회계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2차로 개정하였다.<sup>35)</sup>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실무계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74년 6월 16일 의견서 제1호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시작으로 1981년 12월 11일의 사례 135호까지 의견서 10개, 사례 135개를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으나, 1980년 12월 31일자로 외감법이 공포되고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부여되면서 종료되었다.<sup>36)</sup>

당시 외감법 제13조와 시행령 제6조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회계처리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의하되,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던 바, 증권관리위원회는 회계제도

34)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3.

35)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5 본문

36)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6.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제정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업 회계기준’(9장, 133조, 1981.12.23)을 공포하였다.<sup>37)</sup> 동 기준은 그 때까지 기업회계원칙과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구조와 원칙(또는 규정) 및 규칙으로 되어 있던 계층구조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그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였으며, 이전의 기업회계 관련 규정은 폐기하였다.<sup>38)</sup>

기업회계기준의 1차 개정(1984.9.1), 2차 개정(1985.12.27), 3차 개정(1990.3.29), 4차 개정(1990.9.29), 5차 개정(1992), 6차 개정(1994), 7차 개정(1996.3.30), 8차 개정(1996.12.27) 그리고 9차 개정(1997.12.23)과 별도로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제정(1985.1.1)이 있었다.<sup>39)</sup>

### (3) IMF 이후의 기업회계기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7.12.31)되면서 종전의 증권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이양되고, 그 직후 외감법 개정(1998.1.8)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다시 제정(1998.4.1)하고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다.<sup>40)</sup>

금융감독위원회는 1997년 11월에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sup>41)</sup>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World Bank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면개정(1998.12.12)하였으며 총 8장 91조로 구성하고 하위 규정으로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등 12개 준칙과 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 처리 등 기업회계

37)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7.

38)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8.

39)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9부터 부2.14

40)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15.

41) 인용한 기업회계기준 원문에는 1997년 12월이라 하였으나, 유동성 위기는 이미 1997년 11월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달리 적음

기준에 관한 91개의 해석이 있다.<sup>42)</sup>

동일인의 실질지배력 안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제정 (1998. 10. 21)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작 회계연도부터 30대 기업집단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 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 수익, 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 제거하며 결합재무제표의 주석에는 국내 내부지분율, 상호채무보증 내역, 상호담보제공 내역, 상호자금대차 현황 등 주요 거래내역을 주석에 공시하고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를 요약식으로 작성하며, 주요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을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sup>43)</sup>

당시 금융감독원의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기본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정(1999.12)하였다.<sup>44)</sup>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게 되고 KASB도 기업회계기준 제·개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sup>45)</sup> K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제정(2001.3.30)하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sup>46)</sup>

42)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16.

43)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17.

44)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18.

45)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19.

46)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20. 그 이후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 제정(2001.7.20),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제3호 ‘무형자산’, 제4호 ‘수익인식’, 제5호 ‘유형자산’, 제6호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한 사건’ 및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제정(2001.12.27), 제8호 ‘유가증권’, 제9호 ‘전환증권’ 제정(2002.1.2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정(2002.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제정(2002.8.9), 제11호 ‘중단사업’ 제정(2002.12.31),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정(2003.2.21),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제정(2003.11.7),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정(2003.12.23). 한편 KASB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제정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검토·분석·보완한 ‘재무회계개념체계’ 제정(2003.12.4),

#### (4) K-IFRS 채택선언 이후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에서 IFRS를 우리나라 IFRS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였다(2007.3.15). 로드맵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되,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2009년부터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KASB는 K-IFRS 공개초안을 발표(2007.9.27)하고 검토의견을 수렴(2007.10.31까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포함한 37개의 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개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로 구성된 K-IFRS가 제정(2007.10.31)되었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는 수정의결(2007.12.7) 하였다.<sup>47)</sup>

KASB는 그 이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27A부터 부2.27D까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와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자산 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을 제정(2008.9.19),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제정 및 제1103호 ‘사업결합’ 전면개정(2008.12.12), 실무적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K-IFRS 실무지침 발표(2008.12.30),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 분배’와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정(2009.6. 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제정(2004.2.13), 제16호 ‘법인세회계’ 제정(2004.6.16),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제정(2004.10.13),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제정(2004.11.19), 제23호 ‘주당익’ 제정(2004.12.27),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제정(2005.2.3), 제19호 ‘리스’ 제정(2005.3.18),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9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제정(2005.5.27).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제정(2006.2.6), 제22호 ‘주식기준보상’ 제정(2006.4.14),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 제정(2006.7.7). 제25호 ‘연결재무제표’ 제정(2007.1.8). 이상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20.부터 부2.26까지)

47) 2011.12.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27.

일반기업회계기준 1~31장 등 제정(2009.11.27),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2009.12.28),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제정(2010.6.2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제정(2010.10.8), K-IFRS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정(2011.7.22),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정(2011.11.18),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2011.9.23),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2011.10.28),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2011.11.11).

### 3.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 (1)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K-IFRS 비교

KASB가 제정하여 2010회계연도까지 적용된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K-IFRS를 비교하면 주로 공시체계,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과 법률 또는 정책적 목적 등의 반영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공시체계에 따른 차이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사업보고서에만 차후에 공시하나, ‘K-IFRS’는 모든 공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자산 및 부채 평가방법상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며 후자는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세 번째로 법률 및 정책적 목적상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하거나 허용하지만 후자는 거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sup>48)</sup> 항목별로 주된 차이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부록 2.28에 부연된 내용을 일부수정하면서 계속하여 전제한다.

---

48)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28.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이 되는 재무제표로 보지만, K-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이 되는 재무제표로 본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지분법 적용범위를 종속기업 및 지배기업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지만, K-IFRS는 종속기업의 지분만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대상기업만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지만, K-IFRS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도 연결범위에 포함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면 그 다른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지만, K-IFRS는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하며 실질지배력 기준이 강조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투자부동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지만, K-IFRS는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총당부채를 자원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80% 이상)에 인식하도록 하지만, K-IFRS는 자원 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할 경우 총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지만 K-IFRS는 상각후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법을 허용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퇴직급여총당부채를 종업원의 일시퇴직을 가정한 부채로 측정하도록 하지만 K-IFRS는 종업원의 미래퇴직추정에 의한 부채로 측정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은행은 모든 외화자산과 부채가 외화환산의 대상이지만 K-IFRS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만을 외화환산의 대상으로 본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위험요소별 주식공시를 제한적으로 요구하지만 K-IFRS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만을 외화환산의 대상으로 본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위험요소별 주식공시를 제한적으로 요구하지만 K-IFRS는 위험요소별 질적 및 양적 공시를 광범위하게 요구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보험계약에서 저축요소를 보험요소와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지만 K-IFRS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요소의 분리를 허용하며 임의배당요소를 분리하여 자본이나 부채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보험계약 체결시의 역사적 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지만 K-IFRS는 현행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채무자 부담이 경감될 경우에만 채권·채무 조정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조정시에 당초 채무발생시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K-IFRS는 채무자의 부담 경감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조건 변경시(예컨대 현금흐름의 10% 이상 변경)에 조정의 회계처리를 하고 조정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영업권과 부의 영업권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환입하도록 하지만 K-IFRS는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기 손상검사를 실시하며 부의 영업권은 일시에 환입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며 손상(감액)검사의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K-IFRS는 손상검사의 수행시점, 빈도, 지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현금창출단위별로 영업권을 배분한 후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거래를 매각으로 인정하지만 K-IFRS는 위험과 효익의 이전 등 매각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위험회피 회계에서 이자율 스왑에 간편법을 허용하지만 K-IFRS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지만 K-IFRS는 일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 (2)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여 제정되었으나 ‘K-IFRS’와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s)’의 내용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sup>49)</sup> 항목별로 주된 차이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부록2.29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계속 전제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연결범위를 결정할 때 지분을 30% 초과 최다출자자를 지배회사에 포함하고 특수목적기구와 관련한 별도의 지배력 기준이 없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연결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규모회사(예컨대 외감법 적용대상 회사가 아닌 자산총액 100억 미만)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는 근거법령이 외감법 시행령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연결이나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기업의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을 투자기업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투자기업이 K-IFRS를 적용할 경우 회계정책의

49)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2.29.

일치를 면제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변경시 회계변경연도와 직전 3년간 각 연도별 재계산된 계속사업이익 등의 공시를 요구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과거기간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특정 사건이나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취득부대비용 포함),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추정공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전환증권 소유자는 해당 전환증권을 일반사채와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전환증권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 분리하거나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투자자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자신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지분을 합산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속회사 지분만 합산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를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손상(감액)검사의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도록 하며, 공동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요구한다.

- 종전기업회계기준은 총당부채의 후속측정시 당초 할인율을 적용하였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당초 할인율과 현행할인율 중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해당 대여금을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인식 및 측정하며 그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외화부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화표시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로 분리된 부분을 제23장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현행환율로 환산하도록 요구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전환증권 중도상환시 상환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규정이 없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복합금융상품의 중도상환대가를 부채와 자본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전환사채 등의 유도전환대가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도전환대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만을 기능 통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해당 국가의 통화도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평균환율 산정방법을 특정하여 명시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

-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 Ⅲ. 기업회계기준 현황

#### 1.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및 제정절차

##### (1)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에 관한 주요 쟁점별로 일련번호를 붙인 「기업회계기준서」라는 해설서 형식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종전 기업회계기준을 점차 대체해나가고 있다. 현재 동 회계기준서 및 동 해석서 그리고 그것으로 대체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을 통틀어 「기업회계기준」이라는 명칭이 붙고 있다.

외감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하고 있다.

외감법 제13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은 첫 번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제1항 제1호)”, 두 번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동항 제2호)”으로서 후자를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부터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되며, 기준의 본문은 아니지만 실무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 등을 제공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도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되며, 관련 실무지침 등을 제공한다.<sup>50)</sup>

## (2)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개정, 자체적인 심의, 의견조회기관의 요청이나 학계나 업계의 문제 제기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계획을 수립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위하여 사안 별로 과제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토론회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안을 작성한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의 내용 분석 및 국제재무보고재단(IFRS Found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과 체결한 ‘저작권계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초안을 작성한다. 이 기초안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정·개정 작업의 배경, 관련 규정, 대안별 주장의 근거와 문제점 등이 포함된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공개초안시안을 작성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 제출한다.<sup>51)</sup>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공개초안시안을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공표할 형식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의결한다. 공개초안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인터넷 통신망, 간행물 등을 통하여 예고하며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

50)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16.

51) 이 문단은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34.

자들에게 검토의견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기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예고 기간 중 제출된 공개초안 검토의견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sup>52)</sup>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서나 부록의 끝 부분에 그 내용을 밝힌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고,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일반에 공표한다.<sup>53)</sup>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서’는 원칙적으로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부록 등으로 구성된다. 부록은 용어의 정의, 적용보충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서문,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지침으로 제시된다. 기준서의 각 문단은 해당 기준서의 목적과 결론도출근거, 본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등을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sup>54)</sup>

52)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35.

53)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36.

54)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up>55)</sup>의 일련번호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국제회계기준(IAS)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1001호부터 1099호까지를 사용하고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일련번호는 1101호부터 1999호까지 사용한다.<sup>56)</su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새롭게 인식된 재무보고문제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sup>57)</su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참조, 배경, 적용범위, 회계논제, 결론, 시행일,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서문,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은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지침으로 제시된다. 각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해당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둔다.<sup>58)</su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일련번호는 국제회계기준해석(SIC<sup>59)</sup>) 및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sup>60)</sup>)의 일련번호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SIC)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일련번호는 2001호부터 2099호까지를 사용하고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에 대응하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일련번호는 2101호부터 2999호까지 사용한다.<sup>61)</sup>

55) 이 보고서는 IFRS를 국제회계기준의 의미로 사용하는 통례에 따르나, 이 곳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옮긴 것이어서 원문대로 적어 놓는다.

56)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23.

57)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24.

58)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25.

59)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가 발표한 해석서

60)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pretations Committee가 발표한 해석서

61)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26.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발표한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등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과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erpretations Committee)가 발표한 해석서의 부록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을 발표하였다.<sup>62)</sup>

### 3.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특수분야회계기준

#### (1)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위원회는 이해관계의 정도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63)</sup>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이다.<sup>64)</sup>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준서와 해석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3001호부터 3999호까지의 일련번호와 4001호부터 4999호까지의 일련번호를 각각 남겨두었으나,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각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고 각 장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문단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각 문단은 각 장의 목적과 결론도출근거, 본전문과 ‘재무회계개념체계’ 등을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sup>65)</sup>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본문은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용어의 정의와 적용보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실무지침, 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 등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나

62)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27.

63)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 13 참조.

64)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0.

65)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1.

기준을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부록의 소수의견에는 의결 결과에 반대한 위원의 논거를 약술한다.<sup>66)</sup>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가운데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는 추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된다.<sup>67)</sup>

## (2) 특수분야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은 관계 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우리나라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서 기준서와 해석서로 구성된다.<sup>68)</sup> 특수분야회계기준을 구성하는 기준서의 일련번호는 5001호부터 5999호까지를 사용하며, 해석서는 6001호부터 6999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sup>69)</sup>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제104호, 제105호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으로 재구성되어 특수분야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된다.<sup>70)</sup>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가운데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7-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는 한시적으로 특수분야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된다.<sup>71)</sup>

66)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1A.

67)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1B.

68)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2.

69)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3.

70)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3A.

71) 2011.11.23 개정 기업회계기준 문단 33B.

## 제 2 절 국제회계기준의 채택

### I. 채택 이유

#### 1. 국제적 정합성 확보

회계는 기업활동의 언어로서 회계주체 또는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중세 이탈리아로부터 전파된 부기가 세계로 전파되어 시작된 때문에 본래 어떤 국가의 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각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기업활동의 특색이 반영되어 각국별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sup>72)</sup> 기업활동의 국제화, 자금 조달의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등장 등 회계 또는 회계수요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국가별로 다른 회계기준은 국가를 넘나드는 회계주체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어가고 있던 차에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연차총회에서 네덜란드 회계사 클라이언호프가 ‘회계의 국제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1959.10)<sup>73)</sup>로부터 시작한 세계의 회계협회가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의거한 재무제표 작성을 추진한지 50년이 되었다.<sup>74)</sup>

기업에 대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기본적인 것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이어서, 기왕에도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적인 기구가 작성한 회계원칙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왔으나 국제적으로 단일·통합된 회계처리기준의 등장이 기대되어 회계에 관한 세계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을 주된 이념으로 1973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72) 하시모토 다카시 저(한성기 역), 「2009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콜로세움, 2008, 6쪽.

73) 회계규칙(회계원칙 또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과 함께 그 추진을 위해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리더십을 촉구함

74) 하시모토 다카시 저(한성기 역) 위 책 6~7쪽 참조하여 작성.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제정하게 되었다.<sup>75)</sup>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所以 또는 배경을 적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여 왔으나, 그 기준의 제정 권한 또는 승인 권한이 정부 등에 있었던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 목적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이나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sup>76)</sup>는 문구에 따르면 정부의 영향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약한 민간부문의 취약성을 딛고 정부주도하에 성장해 왔으며 그 점 후술하는 미국 등 민간의 자율규제 기관(SRO: Self Regulation Organization) 주도하에 발전한 주요국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꼭 취약한 사항 또는 부문이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며 지금도 기준의 제정권한 또는 승인권한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고 다만 KASB가 위탁받은 것이다. 아무튼 K-IFRS를 채택한 목적 중에는 국제적 정합성 확보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의 기업회계기준 제정, 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준수,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회계제도의 확립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선결 조건임을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은 이러한 관점을 중시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관점을 밝히고 있다.<sup>77)</sup>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져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가 기업에 대한

75) 권재열, “K-IFRS의 도입에 따른 상법과 외감법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2012.5.17), 91쪽.

76)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1.

77)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8.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관점” 중에서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사업장이나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의 사업장의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78)</sup>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

'199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30일에 13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겸 창립총회를 열고 1999년 9월 1일에 한국회계기준원(2006년 3월 10일 이전에는 '한국회계연구원'이라 함)을 개원하였다'<sup>79)</sup>

IFRS를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함으로써 채택한 한국판 국제회계기준인 K-IFRS의 특징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K-IFRS과 종전의 구 기업회계기준(Korean-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과의 구별되는 요소를 밝힘으로써 K-IFRS가 갖는 특징을 읽어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sup>80)</sup> 첫째, K-GAAP는 그간 규정중심(Rule-Base)이었지만 K-IFRS는 원칙중심(Principle-base)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K-IFRS는 각종 회계처리에 대한 나열식 규칙이나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K-IFRS에서는 종속회사가 있다면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가 주 재무제표이지만, K-GAAP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K-IFRS에서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

78)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12.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관점” 중에서

79) 2011.12.23 기업회계기준 문단2.

80) 권재열 외 워크숍자료집 발표문 91~92쪽.

고서 등 모든 공시정보를 연결실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K-GAAP에서는 연결재무제표는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할 뿐이다.

셋째, K-IFRS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Fair Value Accounting)한다. 여기서 “공정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정하게 거래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처럼 K-IFRS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 3. 국외 환경변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국경이라는 장벽도 높지 않다. 이러한 자본 시장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자금조달을 노리고 준비하는 국제적 자본 조달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복잡한 회계기준이나 국가별로 일치하지 않는 회계기준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 등에 어려움을 해소 하길 바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점차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원하는 움직임이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유럽 등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회계기준 통일작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미국이 참여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sup>81)</sup>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로 이루어져 있다. EU국가들은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동 기준서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81) 김희준, “개정상법 회계관련 규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의 비교 연구”, 「상사법연구(제30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11), 582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의 기준으로 채택한 IFRS를 말하는 것으로서, IFRS는 비영리·민간 국제기구인 IASB가 제정하였다. IASB는 전 세계 회계처리기준을 수렴시킴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IFRS가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82)</sup>

IFRS를 채택한 국가는 2010년 중반을 기준으로 117개국이며<sup>83)</sup> 국제적으로 금융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상당한 수의 국가가 IFRS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 역시 2009년 K-IFRS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조기도입을 시작으로 2011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K-IFRS를 일괄도입<sup>84)</sup> 하게 되어,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현행 상법은 K-IFRS의 도입에 보조를 맞추어 구 상법의 회계처리 규정을 대폭 삭제<sup>85)</sup>함에 따라 현행 상법은 구 상법의 회사계산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 즉 K-IFRS 시행 이전의 구 기업회계기준(K-GAAP)과의 회계처리 기준, 용어, 자산의 평가방법,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 등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문제들<sup>86)</sup>을 상당부분 해결하였다. 또한 연결실체가

82) 양기진,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정립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업법 정합성」, 2012.5.17, 51쪽.

83) 조균제·노직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3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8), 293쪽.

84) 외감법시행령 제7조의2; 2011년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K-IFRS가 적용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701개사, 코스닥시장 1016개사, 비상장금융회사 186개사 등 모두 1903개사에 달한다. 조균제·노직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2집(한국국제회계학회, 2010.8), 291쪽.

85) 자산의 평가방법(제452조), 창업비의 계상(제453조), 개업비의 계상(제453조의2), 신주발행비용의 계상(제454조), 액면미달금액의 계상(제455조), 사채차액의 계상(제456조), 배당건설이자의 계상(제457조), 연구개발비의 계상(제457조의2), 건설이자의 배당(제463조) 등에 관한 구 상법의 조항들이 삭제되었다.

86) 자세한 것은 양기진, “개정상법과 K-IFRS의 조화 모색”, 「상사법연구」 제30권 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8), 113~114쪽

인정될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였고(상법 제447조 제2항) 자본변동표를 재무제표로 인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16조 제1제1호). 물론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의 회계 부분(상법 제3편 제4장 제7절)을 대폭 손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등의 문제에서 K-IFRS와 회사법의 정합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sup>87)</sup>

회계와 법률분야는 그간 재무제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적인 기구가 작성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왔으나, 자본시장이 국제화되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의 국제화되면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단일·통합된 회계처리기준의 등장이 기대되었던 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작성된 것이 IFRS로서 주로 회계에 관한 세계공통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73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 국제기구인 IASB<sup>88)</sup>가 제정하고, K-IFRS는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채택하였다.<sup>89)</sup>

## II.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회사의 범위

외감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각 호는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회사를 정하고 있는데,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자

87) 양기진 위크숍 글 52쪽.

88) IFRS를 개발·발간하는 일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 산하의 15인의 상임멤버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수행한다. 또한 IFRS의 내용에 관하여 제기된 해석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14인의 멤버로 구성된 IFRSIC(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가 운영되고 있다. 2001년 4월 이전의 IASB의 전신은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였다. 권재열, “K-IFRS의 도입에 따른 상법과 외감법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위크숍 자료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업법 정합성」, 2012.5.17, 83쪽의 각주1

89) 권재열, 위 글83쪽.



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업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감법 적용대상기업중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K-IRFW를 적용할 회사에 대하여 각각 아래에 분설한다.

### 1. 주권상장법인

외감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K-IFRS가 적용되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회사로 정하고 있다.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이 주식시장(상법 제542조의2 제1항 전단)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상장법인이다(상법 제542조의2 제1항 전단→상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

### 2.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호→동령 제4조 제7항 제1호)는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호)는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된다. 전환대상자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sup>90)</sup>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

---

9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 제1항)을 말한다.

#### 4. 「은행법」상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은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뜻하고,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동항 제1호)이다. 이상과 같은 은행법상 은행의 요건을 분설하여 보면 ① 예금의 수입·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② 대출하는 업무를, ③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④ 한국은행 외의 법인일 것으로 나누어진다.<sup>91)</sup>

은행법상 은행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상법에 따라 설립된 것은 시중은행과

---

이라 함)」이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호출자, 채무보증, 출자총액제한 등 개별 규제행태별로 규율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법 9조 1항, 령 17조 1항)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법 10조의2 1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 회사는, 그 자산 대부분이 고객의 예탁금 또는 보험료로서 사외 유출이 예정된 것이므로 그 대신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현윤, 「경제법(제4판)」, 법문사, 2011, 204~205쪽 참조 작성).

91) 정찬형·도제문, 「은행법(제2판)」, 박영사, 2005, 62쪽.

지방은행,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은 외국은행)되고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은행이 해당된다.

주요 정책금융기관 중에서 한국산업은행만 살펴 본다. 한국산업은행도 은행법상 은행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sup>92)</sup>, 그것은 예금을 수입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대출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한국산업은행으로 분리되었는데 한국산업은행법은 민영화 과정을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동법 제1조)하고 있으며, 동법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은행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동법 제2조의2)하고 있다. 반대로 정책금융기능을 전담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법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채권을 발행(동법 제23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은행법상 은행이라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법 형식 또는 논리상 외감법에 의하여 국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수입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산의 수탁 등의 형태로 금전을 수입하여 그 자금 일부를 대출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신용매개기능을 담당하는 점이 은행과 유사하지만 보험료 수입 또는 신탁자산 수탁 등은 예금의 수입이나 유가증권의 발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 회사들은 대출업무를 하더라도 은행법상의 은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sup>93)</sup>, 은행법 제6조도 명시적으로 은행에서 이들 회사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별도로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에 포함된다.

저축은행은 예금의 일종인 상호부금을 수입하고 동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은행법상의 회사라 할 수

92) 정찬형·도재문, 위 책 64쪽

93) 정찬형·도재문 앞의 책 65쪽; 한국은행, 「조문별해설 한국은행법」, 2000, 66쪽.

있으나, 저축은행은 업무범위 및 영업구역이 제한된 서민금융기관이어서 은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하며<sup>94)</sup>, 은행법 제6조는 상호저축은행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를 은행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저축은행 대형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건전성 규제 등으로 인하여 수년 이래 계속하여 부도 등 경영부실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셋째 그 결과 저축은행을 서민금융기관으로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재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한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은행으로 본다(은행법 제5조). 법인만 은행으로 본다는 은행법 규정에 대한 예외이다.<sup>95)</sup>

과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위와 같이 은행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았으나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함(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에 따라 설립(2012.3.2)되었고, 이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3항)로써 전술한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으며 그리고 농협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8항)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94) 정찬형·도제문 앞의 책 65쪽; 한국은행 위 책 66쪽.

95) 정찬형·도제문 앞의 책 66쪽. 한편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은행이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상 인가(은행법 58조 1항)를 받아 설치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 영업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지만 이 역시 은행법상 은행(은행법 59조 1항)이며, 반면 국내은행의 국외 현지법인은 소재지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내은행의 국외지점은 은행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은행법이 적용된다)(정찬형·도제문 앞의 책 63쪽 각주 4·5; 한국은행 위 책 63·64쪽).

## 5. 자본시장법상 투자업자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5호)는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dealing)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투자매매업은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매매업, 인수업, 매출업, 구 선물거래법상 선물업자의 매매업,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종합금융회사의 매매업과 인수업, 그리고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매매업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업무, 증권발행업무, 증권인수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sup>96)</sup>

투자중개업(arranging deals)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투자중개업은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구 선물거래법상 선물회사의 선물거래업,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종합금융회사의 중개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투자중개업은 금융투자상품 위탁매매업무, 중개업무, 대리업무, 발행주선업무로 구분된다.<sup>97)</sup>

---

96) 김건식, 「자본시장법(제2판)」, 두성사, 2010, 68쪽.

97) 김건식 위 책 75쪽.

그런데 위에서 밝힌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은 모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라고 전제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갈라진다. 이 때문에, 상법은 위탁매매인을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01조)라고 하는 바, 상법상 위탁매매인 개념의 핵심은 “자기명의”일 것과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소위 「주선」이다.<sup>98)</sup> 그 점 상법상 위탁매매는 중개인 과 명료하게 구별되어야 할 관념인데, 위 투자중개업은 상법상 위탁매매인과 중개인 등 모두를 포괄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탁매매업의 경우 시장과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질서유지와 신뢰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매매당사자로 제한하고, 일반인은 그 자격이 있는 자의 위탁매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시장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이 대표적인 예이다.<sup>99)</sup>

집합투자업(collective investment)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4항)이고,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한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간접투자에 상응하는 개념이면서도 간접투자에 비하여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그 요건은 첫째 자산의 집합

98) 일본 상법의 경우. 주선을 널리 매개행위로 보기에 주선은 중개를 포함하는 개념(平出慶道, 「商行爲法」, 靑林書院新社, 1980, 337頁(이철송 486 재인용))으로서 별도로 위탁매매업은 問屋 그리고 운송주선업은 運送取扱營業이라 함을 볼 수 있으며, 우리도 국어사전을 보면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심지어 민법개정안도 중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 상법은 주선을 단지 매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며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매매 기타 거래를 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이철송 윗 책 485~486쪽(자세한 상법 조문상 주선의 용례에 대하여 참조))

99) 이철송 앞의 책 483쪽.

(pooling), 둘째 투자자로부터의 일상적 운용지시의 배제, 셋째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의한 운용, 넷째 운용실적의 배분으로 나누어진다.<sup>100)</sup> 이 집합투자에는 국가재정법 제81조<sup>101)</sup>에 따른 여유자금의 통합운용도 포함한다.

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인데, 이는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이고 신탁업은 신탁 자체가 아닌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인수란 말을 제외한 것은 투자매매업의 일부인 금융투자상품의 ‘인수’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지만 타당성은 의문스럽다고 한다.<sup>102)</sup>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제336~354조가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폐지된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상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의 매매·중개·인수·투자 등 금융투자업과 함께 어음관리·계좌 등 수신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금융회사였다.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그 업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현재 2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존재한다고 한다.<sup>103)</sup>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6호)는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업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이다(보험업법 제2조 제2호). 보험업을

100) 김건식 앞의 책 78쪽.

101) 국가재정법 81조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102) 김건식 앞의 책 89쪽.

103) 김건식 앞의 책 477쪽 각주2.

경영하려는 자 즉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가 정하는 보험종목별<sup>104)</sup>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자를 가리킨다.

###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7호)는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하는 것인데 K-IFRS를 적용할 자는 신용카드업자로 국한된다.

## 제 3 절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sup>105)</sup>

### I. 기업회계기준의 지위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영업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법률과 마찬가지로 경제생활의 다양한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06)</sup> 문제는 기업회계기준의 실제 기능과는 별개로 이를 법규<sup>107)</sup>로 정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을 문제로 삼는 것은 2011년에 상법, 2012년에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법상의 회계관련 규정을 대부분 삭제하는 대신 민간단체가 제정한

104) 생명보험업으로서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기타 그리고 손해보험업으로서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기타 그리고 제3보험업으로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기타로 분류한다(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호).

105) 황남석,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2012.5.17) 11~47쪽 요약 및 일부전재하며, 그 외에 이 절 IV(맺음말)는 다른 견해도 소개함

106) Acevedo, “The Fox and the Ostrich: Is GAAP a Game of Winks and Nods?”, 12 Transactions: Tenn. J. Bus. L. 63 (2010), p. 71.

107) 법규와 법규범은 구별하여야 한다. 법규범(Rechtsnorm)은 제정된 법(gesetztes Recht)을 말하는데 법규 이외의 사항도 법규범으로 정립할 수 있다. 반면 법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Creifelds, Rechtswörterbuch, 2000, S. 1058;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 (중)」 전정신판, 박영사, 2009, 247~250쪽



기업회계기준을 법규범의 일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개정 상법<sup>108)</sup> 제446조의2는<sup>109)</sup>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이를 받아 외감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상장회사 등<sup>110)</sup>은 금융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K-IFRS’)'을 적용하여야 하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그 이외의 회사는 ‘외감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이다.

개정 상법의 문언상 K-IFRS와 K-GAAP은 법규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기준이 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법규범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특정한 규범이 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이 글은 최근의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이 법규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법규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 II.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검토

법규(Rechtssatz)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sup>111)</sup> 법규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본질적인

108)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109) 신설된 상법 제446조의2에 관한 상세는 권재열, “개정상법 제466조의2의 의의”,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1, 305쪽 이하 참조.

110) 구체적으로는 ① 주권상장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 도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③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⑦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다. 이하에서는 ‘상장회사 등’이라고만 한다.

111) 김철수, 앞의 책, 247쪽; 박영도·김수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 한국법제연구원, 2005, 21~23쪽.

부분을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sup>112)</sup>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인 조세부담, 기업의 신뢰도, 채무초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결국 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sup>113)</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법규범으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기업회계기준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보다 우리 법질서에 부합하고 현실을 무리없이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개정 전 상법은 제7절 회사의 계산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상법상의 회계기준은 엄연히 법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외감법을 근거로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상법 규정을 압도함에 따라 상법의 회계기준은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잃고 있었다.<sup>114)</sup> 반면 개정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 관련 규정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그 대신 K-IFRS와 K-GAAP을 법규범에 포섭시킨 것이다.<sup>115)</sup> 만일,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업회계기준들을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면, K-IFRS와 K-GAAP은 법규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규는 민주국가원리 및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고,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sup>116)</sup> K-IFRS

112) 김철수, 앞2 6. 27. 선고, 2000헌가10 결정 등.

113) Acevedo, op. cit., p. 71; Huber, "Rechnungslegung und Demokratie", AöR 133, 389, S. 393.

114) 오수근, "회계규범 입법론", 「상장협연구」 제53호, 2006, 20쪽.

115) 개정 상법과 무관하게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K-IFRS와 K-GAAP를 적용하여야 한다.

116) 법규는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기 때문이다. 오수근, "회계에 대한 법적 규율

와 K-GAAP이 법규범성을 갖는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 Ⅲ. 법규성 부여의 문제점

#### 1. 법규성 긍정/부정 측면

K-IFRS와 K-GAAP이 상법의 체계 안에 규정되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이들은 법규범 해당성을 갖는다. 나아가, 위 두 기업회계기준이 국민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상이 아닌-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즉 법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법규범이 법규인 것은 아니므로,<sup>117)</sup> 위 기업회계기준을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회계처리지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 시행령 제15조의 문언과 개정문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입법자는 각 회사별로 위 두 기업회계기준을 강제적용하고자 할 의도로 위 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K-IFRS와 K-GAAP은 법규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그에 수반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 2. 민간단체의 법규형성

##### (1)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외감법 제13조 제1항은 특별한 유보없이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FRS를 채택하여 회계처리기준과 기타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가 K-IFRS이고, 후자가 K-GAAP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외감법은 스스로 회계기준을 규정하지

---

체계”, 「상사법연구」 제18권 제3호, 2000, 15쪽.  
117) 김철수, 앞의 책, 247~250쪽.

않고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형태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그 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에 다시 위탁하였으므로 한국회계기준원이 실질적인 회계기준 설정업무를 맡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한을 국회가 금융위원회에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을, 외감법이 재위임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의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주의에 위반한 것이며 금융위원회는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하였으므로 재위임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sup>118)</sup> K-IFRS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위임받은 권한을 IASB에 다시 위임하였으므로 입법권의 재재위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119)</sup>

## (2) 불확정적 규범

회계기준은 그 자체가 법규범과는 규정방식과 규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불확정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 법률에서도 불확정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회계기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는 K-IFRS 및 K-GAAP이 기존의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현저하게 되었다.<sup>120)</sup> 한편 K-IFRS 1021.54는 법규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계처리상황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기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K-IFRS 1017.10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에 관한 것으로서 (3), (4)를 보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상당부분’, ‘대부분’과 같이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이어서 규범의 준수여

118)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보다 하위 법규범에 그대로 다시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효력의 단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헌재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119) 2장 3절 제목에 주하였다시피 황남석,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워크숍자료집의 글임. 이 부분은 동 자료집 54쪽이며 상세는 동 자료 54쪽 이하 참조.

120) 따라서 경영진과 회계감사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김노창/권성수/심태섭, “국제회계기준의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 396쪽.

부에 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sup>121)</sup> 또한 K-IFRS 및 K-GAAP의 경우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도 규정의 일부를 이룬다.<sup>122)</sup> 이런 점은 IFRS 자체가 대륙법계의 성문법보다는 영미법의 판례법에 보다 가깝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자체를 법규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속하여 있는 대륙법계의 입법체계와 조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3) 구속력 미흡

기업회계기준은 엄격한 준수를 요구할 수 없고 일부 개방적이어야 할 특징이 있다. 이를 중요성의 원칙(Materiality Principle)라고 한다.<sup>123)</sup> 중요성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효과를 갖는 거래와 사건은 설사 구체적인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공시되지 않아도 된다는 회계의 일반원칙이다.<sup>124)</sup> 중요성의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K-IFRS나 K-GAAP는 법규에는 해당하지만 법규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구속력이 일반적인 법규보다 현저히 낮다는 어색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4)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부적절성

법규는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귀결로서, 민·형사 법률관계에서의 책임 성립요건인 ‘위법성’과 관련하여, 법규

---

121) K-GAAP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K-GAAP 13.06(3), (4)]. 다만, 그 실무지침은 ‘상당부분’의 범위를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K-GAAP 결 13.11.).

122) 예컨대, K-IFRS 1036.115.

123) 표영인/김평기/이운원/최중윤, 「IFRS 중급회계(I)」, 제3판, 명경사, 2011, 39쪽. 중요성의 원칙 전반에 관하여는 Bernstein, “The Concept of Materiality”, 42 The Accounting Review 86 (1967), pp. 86ff. 이 원칙의 연혁에 관하여는 Chewing Jr./ Higgs, “What Does ‘Materiality’ Really Mean?”, 13 J. Corp. Acct. Fin. 61 (2002), p. 62.

124) US-GAAP에서의 중요성의 원칙은 미국증권거래소, 판례,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학계 등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중요성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들이 US-GAAP 전반에 산재하고 있다.

를 준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에 위반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K-IFRS와 K-GAAP이 법규라면 이를 준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어떤 회계담당자가 K-IFRS를 준수하였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기준은 다른 법규범과 규정방식과 규범내용, 준수를 요구하는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준수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점에서도 회계기준을 법규로 정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외감법도 이를 반영하여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외감법 제17조 제2항).<sup>125)</sup>

#### IV. 맺음말

개정 상법은 K-IFRS와 K-GAAP을 상법전 내로 편입하면서 법규의 형태로 정립하였음에도 법규성을 갖기 힘든 이유를 살펴 보았다. 용약하면 첫째, 위 두 기업회계기준을 정립하는 주체는 각각 IASB와 한국회계기준원인바, 두 단체 모두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이므로 국회의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 다른 법규와 비교하여 볼 때 규정방식이 다르고 규범 내용도 불확정성이 높다. 셋째,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중요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법규에 비하여 구속력이 낮고 불분명하다. 넷째,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법규와 달리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기능하기도 어렵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IFRS가 전세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수용을 포기하

125) 외감법 제20조 제1항은 회사의 임원과 회계업무 담당자가 K-IFRS, K-GAAP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단순한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 그 결과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공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는 힘들 것 같다. 현실적인 방안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 IASB는 논의로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하여는 법적인 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K-IFRS, K-GAAP를 법규가 아닌 기술표준 내지 준법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상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여, 독일상법 제342조 제2항과 같이 K-IFRS, K-GAAP을 준수할 경우에는 상법 제44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예시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본 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위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법적인 통제력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한 다른 측면의 견해를 아래에 소개한다.<sup>126)</sup>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에 의하여 회계기준원이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지만(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6),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로서 회계기준원이 활동하는 것 자체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Sarbanes-Oxley 법 제108조(a) 및 1933년 증권법 제19조(b)에 따라 연방증권규제법상 ‘일반적으로 수용되는(generally accepted)’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의 자격요건으로서 ‘그 위원의 다수가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참고한다면, 기업회계기준원에 대한 독립성의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27)</sup> 독립성은 인적 독립성 뿐 아니라 물적(또는 재정적) 독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의 기업공시에 기준이 되는 기업회계

126) 김두진,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에 대한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2.8.29), 51쪽.

127) 김두진,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에 대한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2.8.29), 51쪽.

기준 제정기관의 중립성을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 견해는 세계각국의 상업장부에 관한 입법주의를 구분할 때 간섭주의(엄격주의), 방임주의 그리고 절충주의로 나누고 있는데 영미는 방임주의의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고 한국은 종래 독일과 함께 절충주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sup>128)</sup> 상업장부 입법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독일상법은 회사법에 대한 EU 제4, 제7 및 제8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1986년 대차대조표법(Bilanzrichtlinien-Gesetz vom 19.12.1985)을 제정하여 상법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HGB §§238-339) 현재는 간섭주의로 파악하여야 하고 절충주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설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업장부에 대한 입법주의는 우리 상법상 회계관련 규정을 바꾸어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제453조(창업비의 계상), 제453조의2(개업비의 계상), 제454조(신주 발행비용의 계상), 제455조(액면 미달금액의 계상), 제456조(사채차액의 계상),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제458조(이익준비금) 등을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 상법은 방임주의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128) 김두진 윗 글



## 제 3 장 기업법제 정립방안

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 그리고 상법(회사법)은 그 적용대상이 동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이들은 밀접한 상호 관계가 예상되므로 이른바 삼위일체(trinity)를 지향하여야 한다. 회계의 빅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K-IFRS의 시행과 관련하여 외감법과 상법은 그 삼자간의 상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기업법 규범이라 할 수 있다.

### 제 1 절 회사법과 외감법 검토사항

#### I. 회사법 검토사항<sup>129)</sup>

##### 1. 이익배당한도 산정방법의 차이

배당가능이익한도의 산정에 관하여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소위 순자산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법 제462조제1항). 이는 구 상법이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구 상법 제452조 내지 제457조의2)이, 회계처리기준과 상충하기 때문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와 기업회계기준상 산출된 배당가능이익한도에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현행 상법은 문제된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회계실무와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한도 산정에 관한 상법 제462조는 여전히 기업회계실무와 여전히 차이가 있으니, 실무상 상법과 같은 순자산접근법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접근법에 입각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실무와의 괴리도 좁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9) 이 부분은 양기진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정립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2012.5.17)의 글을 부분전재한 것임.

## 2. 자본 개념의 문제

### (1) 자본의 취급

기업실체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자본금보다는 총자산에서 소극자산(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본’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상법은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대해서만 언급<sup>130)</sup>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자본금은 대개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그리고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계상된다(상법 제451조).

또한 상법은 상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sup>131)</sup>에 따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5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즉, 현행 상법에 의하면 원론적으로 ‘회계상 자본잉여금 =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등식이 성립한다. 이처럼 상법은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자본금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자본준비금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 개념에서 차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K-IFRS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상법과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 구 기업회계기준(K-GAAP)과 비교하여 볼 때 K-IFRS는 자본 항목

---

130) 다만 상법 제340조의2는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고 하여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의 취지는 무액면주식에 대해서 액면주식의 권면액과 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40조의2제4항제1호 단서의 ‘자본’은 ‘자본금’의 오기(誤記)로 볼 것이다. 양기진, “무액면주식의 도입 관련 회사법상 쟁점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기업환경변화와 회사법의 대응)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3.23.), 17쪽. [이하 ‘건국대학술대회논문’으로 인용]

131) 상법시행령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회계원칙은 크게 (i) 외감법상의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ii)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원칙, (iii) 그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회계기준으로 나뉜다(상법시행령 제15조).

에 관한 회계지침을 매우 단순화하여 자본을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을 뿐 자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sup>132)</sup> 즉 K-IFRS에 의하면 자본의 구성항목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없고 회계작성자의 재량에 맡기다보니<sup>133)</sup>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임에도 각 기업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 (2) 이익배당 차감항목의 가산

구 상법상 회사의 계산 부분의 여러 회계처리 조항이 대폭 삭제되고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상법과 K-IFRS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으나, 이익배당차감항목에 관하여 상법과 기업회계실무가 여전히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다. 이는 회계적으로 자본조정 의 문제와 관련된다.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 accounts)이란 해당 항목의 성격상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최종불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정의된다.<sup>134)</sup> 크게 (i) 자기주식, 신주청약증거금,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출자전환채무 등과 같이 자본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할지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적인 항목, 그리고 (ii)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과 같이 그 특성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 항목의 대칭적 계정으로 자본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자본항

132)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중 4번(재무상태표 자본항목의 표시)에서 인용.; 반면 현행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문단 2.18).

133) 납입자본과 적립금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된다. K-IFRS 제1001호 문단 78(5).

134) 정운오 외 3인, 「IFRS 중급회계」(제2판), 경문사, 2009, 656쪽.

목이 있다.<sup>135)</sup> (i)은 양(+의 자본조정항목으로, 그리고 (ii)는 음(-)의 자본조정항목으로 볼 수 있다.<sup>136)</sup>

이 중 (ii)는 순자산액이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익배당 한도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i)은 자본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인 것이어서 이익배당의 대상이 아니다<sup>137)</sup>. 이에 대하여 상법은 (i)을 이익배당차감항목에 넣지 않아서 배당재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K-IFRS에서는 (i)을 배당재원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sup>138)</sup> (i)은 자본준비금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sup>139)</sup>

### (3) 과잉배당의 문제

#### 1) 과잉배당의 소지

이익배당한도 산정에 관련된 이상의 논의는 상법과 K-IFRS의 접근 방법의 괴리에서 비롯한 면이 큰데, 예컨대 이는 즉 현행 상법처럼 순자산접근법을, 그리고 K-IFRS 등 회계실무상으로는 이익잉여금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양의 자본조정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상법상 산정된 이익배당한도는 K-IFRS 등 회계실무상 산출된 이익배당한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가 양

135) 정운오 외 3인, 위의 책, 696쪽.

136) K-IFRS 제1032호에서는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만 간략하고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자본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 두 가지 유형의 자본조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즉, ① 陽의 자본조정 항목으로는, (i) 출자전환채무, (ii) 주식선택권, (iii) 미교부주식 배당금, (iv) 신주청약증거금 등이 있고, ② 陰의 자본조정항목으로는 (i) 주식할인발행차금, (ii) 자기주식, (iii) 감자차손, (iv)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있다. 권재열 외 3인,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연구」, 법무부용역보고서, 2011.10, 113쪽.

137) 권재열 외 3인, 위의 보고서, 113쪽.

138) 권재열 외 3인, 위의 보고서, 108쪽.

139) 구체적인 수정안으로는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차감항목에 양의 자본조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권재열 외 3인, 위의 보고서, 115쪽.

의 자본조정항목을 배당재원에 포함시켜서 과잉배당을 하였다면 위법 배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인가. 상법상 이익배당한도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제3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된 이익배당이 상법상 이익배당한도를 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위법배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이사에 대하여 상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즉, 양의 자본조정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것임에도 상법상 규정이 미흡하여 회사 밖으로 유출될 경우 이를 상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

### 3. 미실현이익과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

상법상 일정한 미실현이익은 이익배당한도 산정시의 차감항목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4호). 미실현이익은 현행 상법에 이익배당 차감항목으로 새로이 도입된 항목이다. K-IFRS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산을 평가함에 따른 이익은 회계처리와 별도로 아직 현금화된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상법은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으로 하지 않고 있다.<sup>140)</sup>

현행 상법은 나아가 이익배당차감항목을 미실현이익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배당한도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위법 배당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상법 제399조) 및 회사채권자의 회사에로의 반환청구권(상법 제462조제3항)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도 된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가치 평가가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에 실시된 기업,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세부실무

140) 권재열 외 3인, 위의 보고서, 101쪽.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sup>141)</sup>

K-IFRS도 무결점이 아닐 뿐 아니라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다. 흔히 문제가 지적되는 것으로는 공정가치평가 원칙이 있다. IFRS가 공정가치평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면서 기업의 순이익과 현금흐름 항목에서의 변동성(variance)가 커졌다.<sup>142)</sup> 본래 IFRS가 공정가치 평가원칙을 도입한 것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IFRS가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대보다 기여하지 못할 수 있음이 지적된다. 예컨대 유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의 경우처럼 IFRS 자체가 공정가치 평가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IFRS를 도입한 회사들간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즉 IFRS는 원칙중심적(principle-based) 회계기준으로서 큰 틀에서의 회계원칙은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양한 회계처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sup>143)</sup>

또한 IFRS에 의거하여 공정가치 평가원칙에 좇아 개별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이사 등에게 상법상 책임을 부과될 소지가 있어서, 세부적인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4. 자산유출 규제의 통합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기존 법제를 대폭 수정하고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특례와 유사한 조항을 도입하였다. 즉 상법은

---

141) 임석식 외 2인,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저널』제18권제4호 (한국회계학회, 2009), 127쪽 등.

142) Barry J. Epstein, “The Economic Effects of IFRS Adoption,” The CPA Journal (Mar. 2009), at 30

143) 조균제·노직수, 앞의 논문, 304쪽.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이익배당한도 및 거래소에서의 취득 등의 제약 하에 회사의 명의 및 계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회계적으로는 자기 지분상품<sup>144)</sup>을 재취득시에 그러한 지분상품을 자기주식이라고 하여 자본에서 차감한다.<sup>145)</sup>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그 상대방인 주주에게 회사자산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회사채권자를 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정상법은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상법상 이익배당차감항목에 미달할 우려가 있다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한다(법 제 341조제3항). 그러나 결산기 이후 자기주식 취득을 하면, 회계처리상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항목은 건드리지 않고 기타 자본항목에 음(-)의 항목으로 계상한다(음의 자본조정). 이 경우 상법상 법정적립금 금액을 감소시키지 못하므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 영향이 없고, 이익배당액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있는 영업연도의 결산기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이익배당불가항목의 합계액)이 우려되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한다(상법 제341조제3항)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다시 반대로 이사는 해당 영업연도에 이익배당이 불가능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41조제4항 단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그 주식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345조 제1항). 그 대가로 상환주식은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 등 기타 자산을 교부할 수 있으며,

144)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K-IFRS 제1032호 문단 11(용어의 정의).

145) K-IFRS 제1032호 개요 4.

다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이익배당가능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4항). 그런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경우 시장가치에 기반한 공정가액(fair value)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회계상 그것이 가능하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sup>146)</sup>

회사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또는 상환주식의 상환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주주에게 자산 유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이익배당과 동일함에도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배당과 별개 조항에서 별도 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 상법을 개정하여 자기주식취득과 이익배당에 관한 각 규제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sup>147)</sup>

## II. 상법과 외감법 정합성 검토<sup>148)</sup>

### 1. 외감법상 K-IFRS 수용

외감법은 K-IFRS를 회계처리기준으로 명시하면서 그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제3항). 주식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포함)과 비상장금융회사 등이 외감법에 따라 K-IFRS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따라서 비상장금융회사가 아닌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비상장회사가 아니라면 K-IFRS의 의무적인 적용대상이

---

146) 유형자산의 인식에 관하여는 K-IFRS 제1016호 문단 23 및 문단 30.

147) 양기진, 건국대학술대회논문, 22쪽. 회사로부터 주주에게로의 재산유출이 되는 이익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상환주식의 상환에 대해서 통일적인 배분규제를 하는 입법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회사법제 및 RMBCA법제(1979년 개정)이 있다. 자세한 것은 같은 논문, 19~21쪽.

148) 권재열, “K-IFRS의 도입에 따른 상법과 외감법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2012.5.17) 94~97쪽 전재함



아니다. 다만,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회사 중에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의 경우에는 외감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와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K-IFRS를 채택하지 않은 일반기업에게 임의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27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 기준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sup>149)</sup>

2011년부터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금융회사 등에 적용된 K-IFRS를 비롯하여 그 이외의 외감법 대상기업에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적인 성질은 외감법의 하위규범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50)</sup>

## 2. 상법상 K-IFRS 수용

### (1) 개 관

기업회계기준은 세계적인 자본시장의 흐름과 추세에 쫓아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상법의 회계규정<sup>151)</sup>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회계규정의 괴리가 벌어져 왔고,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sup>152)</sup>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상법의 회계규정은 주주와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조정을 위한 규범적 규율인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은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을 직접적인 목

149)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장 1.1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150) 대법원은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의 구성요소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7474 판결).

151) 주로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상법 제7편을 뜻한다.

152) 한국증권법학회,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과 관련한 법규정의 문제점」(2006.12) 및 김건식/박정훈/이창희,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에 대한 의견」, 한국회계기준원 용역보고서 (2003.4) 등

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목적은 다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다.<sup>153)</sup>

2012년 시행 개정상법은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상법 제446조의2), 구체적인 회계규정들을 삭제하고 있다. 요컨대,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의 기준으로서 상법 및 대통령령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제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반면에 구상법에 규정된 자산의 평가방법,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차액, 건설배당이자, 연구개발비 등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들이 전면 삭제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기대한 대로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54)</sup>

## (2) 법원(法源)적 성격

상법 제446조의2와 동 시행령 제15조에서 회사를 유형화하고 각 회사가 따라야 할 회계원칙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회사의 유형별로 적용할 회계원칙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외감법 적용대상회사에는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1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원칙을 적용한다(2호)는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자산 10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 등과 같은 나머지 유형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3호)고 규정하고 있다.

---

153) 김광윤, “최근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회계저널』 제15권 제4호(한국회계학회, 2006), 26~27쪽.

154)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6)에서의 “주요 내용”에세 제시된 법무부가 밝힌 개정취지임.

이처럼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의 경우 일정한 범주에 속한다면 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됨을 명정하고 있어 상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법원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외감법이 상법이 특별법이어서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은 외감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상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5조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적용할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다 상위의 회계원칙을 하위의 유형으로 분류된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읽을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기업도 임의적으로 회계를 K-IFRS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위반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동 시행령에 의하여 K-IFRS는 제한적이거나 상법적용 기업에 대해서도 회계원칙으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게 되었다.

### (3) 연결재무제표 승인 강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다. 이에 상법은 이러한 K-IFRS의 입장을 수용하여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총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었다(상법 제447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 따라서 이상과 같이 상법은 동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기업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미실현이익

K-IFRS 도입됨에 따라 유가증권, 유형·무형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었다. 이에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 즉,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가 처분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평가상 이익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K-IFRS상의 공정가치의 평가이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 4 장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법제도 현황

### 제 1 절 미 국

#### I. 회계기준 및 생성과정상의 특징

##### 1. 들어가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해 왔으며 그것은 최근 2001년 엔론 부실회계 사태와 그에 뒤이은 월드컴의 회계부정 사건에 따라 2002년에는 Sarbanes-Oxley Act 법 제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1934년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도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의 충격과 그에 따른 미비한 자본시장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 2.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의 특징

미국은 회사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나 재무보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기업회계정보공시와 재무보고에 대한 규율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SEC는 이에 등록하는 기업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원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가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SEC 등이 채용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sup>155)</sup> 이러한 모습은 후술과 같이 독일에서 성문법에 의한 규율체계와

155) 권재열,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에 대한 토론문, 2012.8.29. 43·45쪽.

는 틀리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령 체계는 일반적으로 독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회계를 비롯한 경제 및 경영과 관련한 분야는 미국으로부터 그 모범을 가져왔기에, 양국은 회사법을 포함한 상법은 회계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 기업회계 기준의 실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SEC는 후술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제정권을 약 60년 이상 민간자율단체(FASB)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함에 따른 것이며 최후적인 감독권 행사도 여전히 가능하다.<sup>156)</sup> 즉 SEC는 민간자율단체인 FASB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데, 예컨대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SEC는 1962년과 1977년에 걸쳐 FASB(또는 그 전신인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SB))가 제정한 기준과 상이한 방침을 발표하거나 FASB의 재무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거절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 3. 생성과정상의 특징<sup>157)</sup>

미국은 회계기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sup>158)</s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GAAP)’은 어떠한 시점에 현실적으로 회계

---

156) 권재열 윗 글 44쪽

157)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2.8.29. 5~16쪽을 수정·요약·일부전재한 것임

158) 이 용어는 1936년 미국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 산하의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CAP)가 ‘공표한 재무재표의 조사(Examinations of Financial Statements)’에 등장한다.

주체들이 널리 채용하는 회계 수행상의 관행을 의미한다.<sup>159)</sup> 이러한 뜻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은 사기업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위한 회계기준까지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좁게 보아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으로서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임에 따른 수권하에 만들고 있는 회계기준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sup>160)</sup>

오늘날 국제회계기준(IFRS)<sup>161)</sup>가 널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회계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회계기준이다. 현재의 기업회계 및 미국의 기업법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려면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혁상 생성 및 현재 정립상황까지를 관찰하면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형식상으로만 채용하고 있는, 자율규제(Self Regulating)에 기인한 회계기준이 성립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후술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어느 정도 회계전문가 단체 및 그룹을 포함한 직역전문가 단체가 생성 및 기능하고 있지만 주도적인 자율규제규범 정립을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159) Herwitz/Barrett, *Accounting for Lawyers*, 4.ed., 2006, p. 154 보다 넓은 의미에서 어떤 국가의 기업재무상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합의된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이라고 하기도 한다.

160) 미국의 학설이 명시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이를 전제하고 있다. 예컨대, Herwitz/Barrett, *Accounting for Lawyers: 2011 Supplement*, 2011, p. 26.

161) 국제회계기준체제는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기준자문위원회(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SAC),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IC)로 구성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기까지의 경과에 관하여는 Herwitz/Barrett(주159), *op. cit.*, pp. 174ff.

는 못 하고 있다. 이는 뒤에 간단히 적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서구화의 길을 걸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일 정도인 만큼 이를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각별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성문법에 의한 작동이 쉽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회계기준 수립 분야에 뒤늦게나마 어떻게 더 자율규범 정립과 관련된 단체들로 하여금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능을 보장해가면서 무리없이 우리의 회계관행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국제기준이 국제회계기준에 채택하게 할 능력을 보유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각설하고 미국 회계기준 생성 및 발전에 대한 연대별 구분을 보면, 첫 번째 1930년경까지는 규율의 공백기 또는 형성기로서 회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회계관행과 절차를 비밀로 하였고 회사간 회계관행이 통일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1886년 미국공공회계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가 창설되었고 1910년대에 31개 주가 공인회계사제도를 두게 되었다. 위 AAPA를 계승한 미국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는 1918년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협력하여 ‘공인 대차대조표 작성법(Approved Methods for the Prepar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s)’을 연방준비이사회 회보(Federal Reserve Bulletin)에 게재하였고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위 작성법을 감사(監査)의 최소 기준으로 수용하였다. 이어 1929년 대공황 이후 기업회계는 큰 변화를 겪는다.

두 번째 1930년부터 1946년까지 시기이다. 회계원칙의 통일성(uniformity)이 대폭 향상되면서 동시에 민간단체가 회계기준을 설정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1930년 미국회계사회의 ‘증권거래소 협력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Corporation with the Stock Exchange)’는 뉴욕증권거래소 (NYSE)와 협력하여 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listed companies)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원칙을 개발(회계 5대 원칙; five broad accounting principles). 하고, 이를 NYSE가 승인(1932.9.22)하였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을 개발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특히 이것은 단일 회계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회사들의 자신의 재무제표에 적합한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접근 방식이란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SEC는 1933년 증권법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SEC에 재무제표를 신고하는 경우 ‘실질적인 권위를 갖는 지지(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를 받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AIA의 활동이 회계원칙의 통일을 위한 활동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 1946년부터 1959년까지 시기로서 혼란기라 할 수 있다. 2차대전 후 미국경제가 대폭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회계원칙 통일화의 압력이 증가하였지만 일반적인 통일적 원칙이 성립되지는 못하였던 시기로 총평할 수 있다.

네 번째 1959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통일적인 회계원칙 성립시대이다. AIA를 계승한 미국공인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ICPA)는 회계원칙위원회(APB)와 준자율연구조직인 회계조사연구부(ARD)를 통하여 회계원칙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그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하였고 AICPA는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를 설립(1973.7)하였다. FASB체제는 FASB와 재무회계재단(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과 재무회계기준자문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 FASAC)의 세 기구로 구성된다. FASB는 AICPA로부터 독립하여 종전 기구보다 훨씬 많은 회계기준을 제정하였고 개념체계를 공표하여 회계기준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1년 12월 자산 규모 미국 5위인 Enron 의 파산이 경제계를 뒤흔든 끝에 Sarbanes-Oxley

Act(SOX)가 제정되었는데 동법에 의해 FASB의 회계기준 권한위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재정적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 II. 회계기준의 규범화

### 1. SEC의 역할

SEC는 1938년 회계처리기준 제정권한에 대하여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1916년 설립된 AIA(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와 그 명칭을 1957년 변경한 현재의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게 위임하였다. AICPA는 회계감사기준(GAAS)의 제정권한과 회계감사인을 자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CAP)를 설치하여 기술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정립하다가 1959년부터 회계원칙위원회(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가 회계처리기준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다시 그 회계처리기준 제정권한이 1973년 에 회계관련 전문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민간 단체인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에 위임된 상태이다.<sup>162)</sup>

SEC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공개회사(publicly held corporation)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갖지만 SEC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인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 관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쇄회사(privately held corporation)인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FASB와 AICPA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6년 공동으로 폐쇄회사재무보고위원회(Private Company Financial Reporting Committee: PCFRC)를 구성하고 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폐쇄회사의 특수성까지도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sup>163)</sup>

162) 권재열 위 토론문 44쪽.

163)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워크숍자료집 27쪽.

연방의회는 일차적으로 회계기준에 관한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방의회는 1933년 증권법 제19조(a) 및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b)를 통하여 SEC에게 상장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율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입법권을 위임하였으며, 회계기준의 규율권한을 위임받은 SEC는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것인지 회계사업계에 재위임할 것인지 논의한 끝에 3-2의 근소한 차이로 회계사업계에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재위임하기로 결정하고, SEC는 회계연속통첩(ASR) 제4호를 공표(1938.4.)하여 상장회사가 SEC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권위있는 지지를 얻은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 which have 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였고 이 때문에 SEC가 공식적으로 회계절차위원회(CAP)에 회계기준 제정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sup>164)</sup>

그 후, SEC는 1973년 공표한 회계연속통첩(ASR) 제150호<sup>165)</sup>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가 제정하는 회계원칙과 기준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를 받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와 다른 회계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함으로써, 민간단체가 설정한 회계기준이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권위있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된 최초의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회계기준을 작성하는 민간단체가 비공식적인 묵인하에 회계기준을 작성하였을 뿐이었다.<sup>166)</sup>

요약하면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계처리 기준제정권한은 약 60년 이상 민간부문에게 위임한 것이고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SEC의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FASB와 다른

164)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워크숍 자료집, 17쪽.

165) 현재는 재무보고통첩(Financial Reporting Release) 제1호 제101호이다.

166)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워크숍 자료집 18쪽.

지침과 방침을 간간이 발표했음은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sup>167)</sup>

## 2. 민간단체 역할의 재확인

다시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 제108조(a) 및 이에 따른 1933년 증권법 제19조(b)는 SEC로 하여금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회계기준설정기구가 제정한 회계기준을 연방증권규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generally accepted)’ 회계기준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정한 조건’이란 ① 사법인(private entity)으로 조직되고, ② 그 위원의 다수가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며, ③ 사베인스-옥슬리법 제109조에 따라 운영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④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며, ⑤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국제회계기준과 수렴을 한도로 하여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68)</sup>

최근 SEC는 외국 상장회사가 연방증권법에 따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이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칙(Acceptance From Foreign Private Issuers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ithout Reconciliation to U.S. GAAP)을 공표(2007.12)하였으며, 이는 SEC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도 회계기준 설정단체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sup>169)</sup>

이와 같이 민간단체인 FASB가 주도하고 있는 US-GAAP이 규범적 성격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크기가 크고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규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167) 권재열 위 토론문 43~44쪽 참조.

168) 1933년 증권법 제19조(b)(1)(A).

169)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위 워크숍 자료집 19쪽.

하지만 FASB가 신뢰성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제정권한과 관련된 기관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제정권한을 갖는 기관의 구성원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sup>170)</sup>으로 인한 중립성·객관성의 확보를 또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즉 US-GAAP의 제정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면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 달리 말하면 회계정보 규제기관인 SEC, 주정부규제기관 및 AICPA를 비롯한 非정부사용자기관들이 FASB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71)</sup> 물론 이것도 넓은 시장과 많은 참여자들로 인하여 소수 주도자들의 전횡을 막고 중간점을 찾을 수 있는 장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작은 한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립지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회사법상 US-GAAP

미국의 회사법은 기업의 회계처리나 재무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모범사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RMBCA)과 주회사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sup>172)</sup> 예컨대 첫 번째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 제16.20조(a)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US-GAAP에 따라 작성할 경우 연차재무제표도 GAAP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는 것, 두 번째 RMBCA 제16.20조(b)가 연차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보고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회사 대표나 회계기록담당자가 재무제표가 US-GAAP에 따라 적성되었는지 여부와

170) 권재열 윗 토론문 45쪽

171) 권재열 윗 토론문 45쪽.

172) 권재열 윗 토론문 46쪽.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작성근거를 밝히는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 주회사법의 경우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은 회사가 US-GAAP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 회사법 제114조는 US-GAAP을 주회사법상의 회계기준으로 법정한 대표적인 입법례이고 그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작성시에 준수하도록 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란 US-GAAP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요약하면 주 회사법상 US-GAAP을 회계기준으로 법정한 주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의 회계수요에 부응하고 일정한 수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173)</sup> 이 견해가 제시한 예를 보면 MBCA 제 6.40조(d)는 이사회가 회계관행의 기초(basis of accounting practices) 및 합리적 원칙(principles that are reasonable)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당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US-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US-GAAP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도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

반면 1984년의 모범사업회사법(MBCA) 제6.40조(d)와 달리, 전술한 1994년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 16.20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수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서’(on the basis of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것은 US-GAAP도 주회사법상의 회계기준으로 인정한 것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sup>174)</sup>

---

173) Committee on Corporate Laws,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notated, 4. ed., 2008, p. 6-231.(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위 워크숍 자료집 28쪽 각주92 재인용; 적지 않은 연방법과 주법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174) 김두진, 위 워크숍자료집 토론 50~51쪽

### Ⅲ. 미국기업회계기준 제정절차와 특성<sup>175)</sup>

#### 1. 제정절차

FASB가 US-GAAP을 작성 및 공포하는데, 기업회계기준 제정 절차는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s)상, 첫 번째 과제선정(admission to agenda)으로 시작한다. 그러려면 ① 2이상의 회계관행이 있어야 하며 ② 2이상의 회계관행 때문에 재무제표에 간과할 수 없는 이질성이 발생하며, ③ FASB 자원으로써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sup>176)</sup> 두 번째 예비 숙고(preliminary deliberation)를 거친다. 연구진은 쟁점을 정리하여 FASB의 위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린다. 중요한 과제는 대책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토론 비망록(discussion memorandum)을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의견을 구하며, 공청회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시안 도출(tentative resolution)이다. FASB는 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기준서, 개념체계, 해석서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을 공포한다. 넷째 단계는 심화 숙고(Further deliberation). FASB는 의견을 정리하여 반영하는데, 초안에 큰 수정 사항이 있으면 제2 초안을 공포한다. 다섯째 최종 결정(Final resolution). FASB 위원들이 표결로 초안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한다.<sup>177)</sup>

US-GAAP이 이상과 같은 절차만을 거쳐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SEC가 제출을 요구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으로 발전한 공시 원칙들도 있다.

175)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위 워크숍 자료집 21~27쪽 수정 및 일부 전제함.

176) Graham/Carmichael, *Accountants' Handbook: Vol. 1*, 12.ed., 2012, .p. 1-16.

177) *Ibid.*, pp. 1-16~1-17.

## 2. 규범적 특성

### (1) 판례법(common law) 성격

US-GAAP은 성문화(codification)되고 있음에도 본질적으로는 최선의 회계관행을 반영한 독립적인 회계처리기준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US-GAAP은 판례법(common law)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US-GAAP은 성문법이 아니므로 FASB가 기업회계기준GAAP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수요자들은 유상으로 사용한다. 그 판례법적 규율의 장점은 정치와 무관하게 경제적인 수요 및 변화를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더 투명하고 시장적이라고 한다. 물론 US-GAAP의 성문화(codification) 현상은 US-GAAP에도 대륙법(civil law)적 접근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한다.

### (2) 준법규성

FASB의 회계기준설정권한을 재확인한 SEC의 정책적 성명[Commission Statement of Policy Reaffirming the Status of the FASB as a Designated Private-Sector Standard Setter](2003.4.25)은 스스로 그 법적 특성이 위임입법에 의한 행정명령(agency rule)이 아니라 정책적 성명(statement of policy)이라 한다.<sup>178)</sup> 그것은 US-GAAP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이다.<sup>179)</sup> 결국 연방증권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FASB

178) 그 이전에도 미국공인회계사회(AICAP) 이사회가 공표한 ‘회계원칙위원회의 의견서와 상위할 경우의 공시(Disclosure of Departures From Opinions of Accounting Principles Board)’는 회계원칙위원회의 의견서와 다른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권위있는 지지(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회계연속통첩(ASR) 제150호는 회계전문자에게 예외적인 경우(unusual circumstances)로서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가 제정한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면 적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와 다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위 회계연속통첩 주석2).

179) 따라서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위 정책적 성명 III.



가 제정한 US-GAAP을 준수하는 것은 강력한 사실상의 규범적 효력 때문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SEC가 제정권한을 갖는 회계기준은 법규이지만 FASB가 구체적으로 제정한 US-GAAP은 SEC가 제정권한을 갖는 회계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상의 추정을 받는 것일 뿐이어서 US-GAAP은 준법규적 성격(quasi-law, Quasi-Gesetzeskraft)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80)</sup>

실제로 SEC 스스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FASB가 제정한 US-GAAP을 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SEC는 2005년 스톡옵션 공정가치를 비용처리하도록 하는 재무회계기준서(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AS) 제123R호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FASB의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sup>181)</sup>

### (3) 규정중심(rule-based) 방식

회계기준 규율 방식은 ‘규정중심(principle-based)’ 방식과 ‘원칙중심(principle-based)’ 방식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전자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회계기준은 추상적·포괄적 방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전문적 판단에 의존한다. 전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분명한 기준을 갖는 장점과 함께<sup>182)</sup> 회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반없이도 그 규정이 취지를 우회하여 회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US-GAAP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IFRS이다.

사베인스-옥슬리법 제108조(d)는 Enron 사태의 원인이 전자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SEC에 후자에 대한 연구 및 의회에 대한 그

180) Arthur Anderson & Co. v. Sec & Exch. Comm’n, No. 76C2832, 1976 WL 826 (N.D. Ill Sept. 3, 1976); Bush, *Divided by common language*, 2005, p. 20; Alves, *Reporting nach US-GAAP*, 2.Aufl., 2011, S. 14..

181) Herwitz/Barrett, *op. cit.*, pp. 159, 173.

182) Bratton, “Heedless Globalism: The SEC’s Roadmap to Accounting Convergence”, 79 *U. Cin. L. Rev.* 471 (2010), p. 490.

결과보고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FASB는 연구보고서[Study Pursuant to Section 108(d)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on the Adoption by the United States Financial Reporting System of a Principles-Based Accounting System]를 발표(2003.7)하였다. 그 연구보고서는 양자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 방식을 절충한 목적지향적(objectives-oriented)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다.<sup>183)</sup> 이렇게 IFRS로의 수렴(convergence)이 일부 지지 받고 있으나,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한지는 계속 논쟁중이다. 아무튼 국제회계기준IFRS로 전환하는 추세도 제동이 걸려 있다.

#### IV. 성문화와 국제회계기준<sup>184)</sup>

##### 1. 기업회계기준의 성문화(codification)

기업회계기준의 통일성(uniformity)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2009년 7월 이전까지 미국기업회계기준은 A, B, C, D, E의 복잡한 위계(hierarchy)에 따른 다양한 공표물(pronouncement)이 존재하여 회계사조차도 복잡한 위계하에서 적절한 회계기준을 찾아내기가 곤란할 정도이다.<sup>185)</sup> 복잡한 회계기준의 존재형식을 단일한 규정집으로 성문화(codification)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기존의 복잡한 회계기준을 단일한 규정집으로 정리한 ‘성문화된 미국기업회계기준(codified GAAP)’이 발효(2009.7)되었고, US-GAAP은 성문 지침(authoritative guidance)과 비성문 지침(nonauthoritative guidance)<sup>186)</sup>으로 구분되었다. 주의할 것은 성문화된 US-GAAP도 기존 US-GAAP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

183) Herwitz/Barrett, *op. cit.*, pp. 155~156, 180.

184)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위 워크숍 자료집 29~34쪽 수정 및 일부 전제함.

185) 상세는 Herwitz/Barrett, *op. cit.*, pp. 182ff.

186) 비성문화된 미국기업회계기준은 기존의 E 범주(category)에 속하였던 것으로서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 개념체계(Concepts Statements), 국제회계기준(IFRS), 학술적 저술, 사적 영역의 저자가 저술한 지침,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등 관련 기관의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용자가 접근하게 편리하도록 조직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문화에 따라 수많은 기업회계기준 관련 공표물들이 90개의 주제로 일관된 구조 하에 조직되었다.

## 2. 국제회계기준과의 수렴(convergence)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두 기준의 수렴(convergence)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2002.10)하였고, 그 배경은 국제자본시장간의 자본흐름을 촉진하려는 경제적인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었다.<sup>187)</sup>SEC는 처음부터 계속 적극적인 태도<sup>188)</sup>를 보였는데, 예컨대 외국상장회사가 연방증권법에 따라 SEC에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를 수 있다는 규칙<sup>189)</sup>을 공표(2007.12)하고, 국제회계기준 채택을 위한 지침<sup>190)</sup>을 공표(2008.11)하기도 하였다. SEC는 위 지침에서 2011년까지 IFRS를 미국기업회계기준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몇몇 국내 문헌에도 미국이 IFRS 채택국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매도프(Madoff) 사기사건 폭발, 도드 프랭크(Dodd-Frank) 금융개혁법에 따른 100개 이상의 규칙 제정업무,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IFRS와의 수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중 미국 피츠버그시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2009.9)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FASB에 2011년 6월까

187) Herwitz/Barrett, *op. cit.*, p. 174. 이후 공동작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06년과 2008년에 위 양해각서를 개정하였다.

188) Herwitz/Barrett(주159), *op. cit.*, p. 181.

189) Acceptance From Foreign Private Issuers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ithout Reconciliation to U.S. GAAP (Securities Act Release No. 8879, Exchange Act Release No. 57,026, 73 Fed. Reg. 986 (Jan. 4, 2008)(<http://www.sec.gov/rules/final/2007/33-8879.pdf>))

190) Roadmap for the Potential Use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y U.S. Issuers (73 Fed. Reg. 70,816. <http://www.sec.gov/rules/proposed/2008/33-8982fr.pdf>)

지 단일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한 요청에 따라 추진력이 다시 불고, SEC가 IFRS와의 수렴을 지지하는 성명서<sup>191)</sup>를 공표(2010.2)하기도 하였는데, 이 성명서는 IFRS의 적합성을 평가하여<sup>192)</sup> 2011년이 지나기 전에 IFRS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채택할 경우 미국의 상장회사는 2015년 또는 2016년까지 유예기간을 갖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반대론이 적지 않았다. 반대론은 회계주권 상실을 빼아파 하기도 하고, 장기간 발전시켜서 즉 말하자면 회계이용주체들이 몸에 익혀서 편리한 현행 기업회계제도 변경에 대한 반감과 IFRS로의 전환비용을 내세웠다.<sup>193)</sup> 결국 SEC 수석회계사실은 IFRS와의 통합을 위한 절충적 입장의 실무보고서를 공표(2011.5)하였다.<sup>194)</sup> SEC는 2010년 2월부터 IFRS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그 연구결과가 IFRS로 전환될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었는데, 그 최종보고서가 최근(2012.7.13) 공표<sup>195)</sup>되었다. 이 자체가 SEC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인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 내용만으로 보면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이 IFRS를 채택(adoption)하

---

191) Commission Statement in Support of Convergence and Global Accounting Standards (75 Fed. Reg. 9494. <http://www.sec.gov/rules/other/2010/33-9109.pdf>)

192) 위 성명서는 적합성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① 국제회계기준의 개발 정도, ②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기준설정주체의 독립성, ③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교육, ④ 미국의 규제환경, ⑤ 기업에의 영향, ⑥ 인적자원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193) Herwitz/Barrett, *op. cit.*, p. 181; Herwitz/Barrett, *op. cit.*, pp. 13~14.

194) Work Plan for the Consideration of Incorporating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to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for U.S. Issuers: Exploring a Possible Method of Incorporation <http://www.sec.gov/spotlight/globalaccountingstandards/ifrs-work-paper-052611.pdf>. 콘돌스먼트(condorsement) 방식을 제안함. 이는 수렴(convergence)과 승인(endorsement)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기존의 US-GAAP을 폐기하지 않고 IFRS와의 수렴을 진행하고 또 필요하면 IFRS를 그대로 승인하는 방식을 병용하자는 것. 따라서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는 계속 존속하게 된다. 이 방식은 최근 미국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의 유력한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Herwitz/Barrett(주 160), *op. cit.*, pp. 12~13, 14.

195) Final Report on Work Plan for Global Accounting Standards (<http://www.sec.gov/news/press/2012/2012-135.htm>)

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물론 보고서는 IFRS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미국 자본시장 참여자 다수가 IFRS 채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IFRS 채택 일정도 언명하지 않고 있다.

## 제 2 절 독 일<sup>196)</sup>

### I. 기업회계기준의 인식

#### 1. 상법에 의한 회계규율

독일 회계기준 등의 회계법은 상법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독일법의 특유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법의 자세한 규율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 것이다. 단적으로 독일은 법이 중요한 나라이고 많은 것을 법적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도 성문법이라는 형태로 확립하고 있어서, 회계의 기본적 규범은 상법전(Handelsgesetzbuch)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독일 상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독일 기업회계기준은 나폴레옹 법전에 기반을 둔 1866년 일반 독일 상법에서 유래하였으나, 1985년 유럽공동체법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법전 회계편의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다.<sup>197)</sup>

우리나라에서 회계에 관하여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회계의 일반원칙이 별도로 독일에서는 발전하지 않았고, 상법의 이익계산과 관련하여 수용하고 있다. 이는 고유한 독일의 법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독일도 우리가 흔히

196) 본 절의 II와 III은 유주선, “독일 상법상 기업회계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5.25.을 요약 및 수정하여 전재함

197) BGBl. I S. 2355(유주선 윗 글 89쪽 각주2).

말하는 미국의 GAAP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상업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상법전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명료한 법률로써 정의내린 것이 아닌데 반하여 독일은 기업회계기준도 상법전의 규정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독일의 회계문제가 대부분 법률적 판단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sup>198)</sup>

한편 명실상부하게 EU를 주도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 독일은 EU의 지침들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컨대 이미 1986년도부터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대차대조표(상법상 회계관련규정)는 자본회사의 연차재무제표에 관한 1978년 제4지침(대차대조표지침),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1983년 제7지침 그리고 연차재무제표와 회계감사인 자격에 대한 1984년의 제8지침을 통하여 입법화되고 있다.<sup>199)</sup>

## 2. 기업회계기준의 인식근거<sup>200)</sup>

현재 독일상법상 기업회계기준의 인식근거는 정규부기의 원칙과 유럽연합 채택국제회계기준의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 (1) 정규부기의 원칙(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GoB)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은 정규부기의 원칙이다(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GoB'). 독일상법 제238조 제1항은 모든 상인에 대하여 회계장부 작성의무를 부과하면서 회계장부에는 상거래와 재산상태를 GoB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상법은 GoB를 상

198)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회계저널(제6권 제2호)」, 1997, 212쪽.

199) 상세는 정상근, 유럽회계제도의 변화와 독일상법회계의 특성, 「상사판례연구(제13권)」, 2002, 168쪽 이하.

200) 이 곳은 황남석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앞 워크숍자료집 15~17쪽을 전재함

인(제243조 제1항), 물적회사(제264조 제2항), 콘체른(제297조 제2항)의 각 결산서 작성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GoB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데 통상 상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회계를 포괄하는 규율과 관습의 체계로 정의된다.<sup>201)</sup> 통설은 GoB가 불확정 개념이므로<sup>202)</sup> 회계관행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sup>203)</sup>

GoB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은 1897년의 독일상법 제38조 제1항이었다. 위 규정은 현행 독일상법 제238조 제1항과 같은 일반규정의 형태였으며 구체화된 개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sup>204)</sup> 그러나 입법자는 점진적으로 일련의 GoB를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GoB의 유동성을 제한하고자 하였다.<sup>205)</sup> 다만, 입법자는 GoB를 독일상법 중에 편입한 경우에도 경제생활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sup>206)</sup> 현재 GoB는 독일상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편입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sup>207)</sup>

## (2) 유럽연합 채택 국제회계기준(EU-IFRS)

유럽연합은 1999년의 유로화 도입 이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 액션 플랜(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을 준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2002년 7월 19일에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칙 1606/2002호[Regulation (EC) No 1606/2002 of

201) Förchle/Usinger, in Ellrott/Förchle/Kozikowski/Winkeljohann, Beck'scher Bilanz-Kommentar, 8. Aufl., 2012, § 243 Rn. 1; Paal, Rechnungslegung und DRSC, 2001, S. 42.

202) Paal, op. cit., S. 43.

203) Ibid., S. 43.

204) Beisse, "Wandlungen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ilanzierung-Hundert Jahre GoB", in Flume/Jakobs/Picker/Wilhelm, Gedächtnisschrift für Brigitte Knobbe-Keuk, 1997, S. 386. 1861년의 독일구상법(ADHGB) 제28조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GoB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Ibid., S. 388~389.

205) 그 대표적인 법률인 1965년 독일주식법(Aktiengesetz 1965)이다. Ibid., S. 396.

206) Förchle/Usinger, op. cit., § 243 Rn. 19.

207) 상세는 Paal, op. cit., S. 44~45.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July 2002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Regulation’]를 채택하였다. 위 규칙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회원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2005년 1월 1일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유럽연합 채택 국제회계기준(‘EU-IFRS’)에 따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의회 및 이사회 규칙은 법규범으로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므로<sup>208)</sup> EU-IFRS도 법규범으로서 독일에 적용된다. 그러나, 독일은 위 규칙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2004년 입법한 기업회계개혁법(Bilanzrechtsreformgesetz: BilReG)을 통하여 독일상법 제315a조와 제325조 제2a항, 제2b항을 신설하였다.<sup>209)</sup>

독일상법 제315a조 제1항은 EU-IFRS의 적용대상인 상장 연결모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상법규정을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IAS-Regulation의 적용대상이 아닌 연결모회사라도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EU-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이외의 모회사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EU-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상법 제325조 제2a항, 제2b항은 그 밖의 회사가 공시목적에 국한하여<sup>210)</sup> EU-IFRS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기업회계기준의 설정권한 검토<sup>211)</sup>

독일은 정규부기의 원칙인 GoB 중 일부를 상법에 규정하였지만 그 외의 GoB는 불확정 개념이어서 내용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구설인 귀납법(induktive Methode)설과 신설인 연

208) 사법연수원, 「EU법」, 사법연수원, 2007, 46쪽.

209) Merkt in Hopt/Merkt, Bilanzrecht, 2010, § 315a Rn. 1ff, § 325 Rn. 6ff.

210) 따라서, 회사법상의 자본유지와 배당가능이익산정, 세법상의 과세소득산정의 경우에는 독일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Ibid., § 315a Rn. 6.

211) 이 곳은 황남석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앞 워크숍자료집 17~19쪽을 전재함



역법(deduktive Methode)설이 대립하는데 전자는 평균적인 성실한 상인의 행위로서 확립된 회계관행이 GoB로 편입된다는 것이며, 반면 경영학계 통설인 후자는 GoB는 전적으로 회계상의 의미와 목적에 기하여 연역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으로서 독일의 판례도 연역법을 취한다고 한다. 한편 유력설은 양자를 결합한 절충설의 입장이다. 독일은 1998년 기업영역통제·투명화법(KonTraG)을 입법하면서 기존의 GoB를 보완하고자 상법 제342조를 개정하여 민간회계기구인 독일회계기준위원회(Deutsches Rechnungslegungs Standards Committee: 'DRSC')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법 제3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DRSC는 연결회계(Konzernrechnungslegung)에 관한 원칙을 법무부에 추천할 임무를 부담하며, 연방법무부는 DRSC가 추천한 연결회계의 원칙을 승인할 수 있고 승인을 받은 연결회계의 원칙을 준수한 회사는 GoB를 준수한 것으로 추정한다(독일 상법 제342조 제2항). 말하자면 DRSC는 민간단체이므로 규범력은 주고 있지 않은 셈이며, 연방법무부의 승인 범위내에서만 DRSC가 GoB를 제정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EU가 IFRS를 도입함에 따라 IASB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설정주체의 하나가 되었는데,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채택(endorsement)한 것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IFRS가 바로 법규범적 기능을 하는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IAS-Regulation을 매개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GoB의 구체적인 법적 성질은 여러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상법에 성문화된 GoB는 법규범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성문화되지 않은 GoB는 기술표준(Fachnormen)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GoB가 민간단체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 II. 독일 기업회계제도의 목표와 기능

### 1. 회계제도의 목표

기업회계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히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그것을 살펴 보면 회사 또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는 여러 관계자들이 그 회사 또는 기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회계제도의 목표가 자본시장을 주 요소로 판단하는 미국의 그것과는 달리, 독일은 주된 목적을 기업파산을 최소화하고 기업유지강화에 이바지하며 혹 파산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의 수량적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재무제표가 갖는 주요 목적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시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을 결정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잘못된 회계를 할 경우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곧 회사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sup>212)</sup> 따라서 종래 독일 상법상 기업회계기준은 채권자들이 상환일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은 회사자본의 유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며, 또한 조세법상 우회적인 탈법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요컨대 독일은 그 기업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중시하고 있는 것이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

212) Lantermann/Richard, Ausschüttung auf Basis von IFRS: Bleibt die deutsche Bundesregierung zu zögerlich?, DB 2008, 1925 (1926).

## 2. 종래 지적되는 사항들

종래 독일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선 첫째 독일회계기준이 지나치게 원칙만 중시하는 형태의 회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sup>213)</sup> 기업회계기준이 상법에서 규정으로써 만들어져 있으며 혹 규정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장부기록의 적정성과 관련한 원칙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세한 회계 사항들은 세세한 기준을 법령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래 존재하던 선행하는 사례들도 주요한 회계기준으로써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회계에 대하여 단순성을 부각시키고 있다.<sup>214)</sup> 독일은 앞에 적은 것과 같이 채권자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개별재무제표가 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이 현시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되었다. 아울러 조세법상 명료한 조세 부과를 위하여서도 이러한 회계의 단순성 확립을 위하여 개별재무제표가 더 선호되었던 것이다. 종래 회계 절차상 기업들은 회계 또는 조세법상 대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만을 작성하면 되었다. 이에 대하여 개별재무제표가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조세법상 조세부과에 대한 기준 제공, 그리고 일반적인 목적하에 그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손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갖는 장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보수주의적인 회계원칙이다. 독일기업회계기준은 안정적으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시각과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원칙과 작성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는 회사자본의 유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오

213) 황운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41쪽 이하.

214)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2010. 1. 50쪽.

늘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회계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현주의’와 ‘충당부채’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실현주의는 오직 현실에 나타난 수익에 대해서만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충당부채는 손실이 예상되기만 하여도 그것을 인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 사례들은 채권자보호에 방점을 찍는 보수적인 기업회계 방식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와 같은 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과 공사자산 진행률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도 주요한 보수적 입장으로 꼽을 수 있어서<sup>215)</sup>, 채권자 보호를 과도하게 중시하여서 회사 또는 기업의 이익조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 기업활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을 금방 인식할 수 있다.

### Ⅲ. 대차대조표지침법과 회계현대화법

#### 1. 대차대조표지침법

##### (1) 들어가며

독일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법에,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법에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등기된 협동조합은 특별법인 협동조합법에 일부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바깥의 상당 부분 회계에 대한 규정은 상법전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12월 대차대조지침법(Bilanzrichtlinien-Gesetz)<sup>216)</sup>이 제정하고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계제도와 유관한 상법과 공시 등의 기업회계기준 법규범들이 상당폭 개정되고 이어 시행하게 되었다.<sup>217)</sup>

215)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2010. 1. 51쪽.

216) BGBl. 1985 I, S. 2355.

217) K. Schmidt, Handelsrecht, § 15 I, 3, S. 374 f. 대차대조지침법 제2조에 의하여 주식법은 제1편 제5장과 제2편 제5장의 규정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회계

## (2) 특 징

1986년 개정 상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sup>218)</sup> 모든 상인이 작성하게 되는 연도계산서 작성시, 장부작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 자본회사에 대한 연도보고서는 장부작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본회사의 자산, 재무상황 및 경영성적에 대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사실과 적정의 관점’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추가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1986년 개정 독일 상법이 이채로운 점은 자본회사에 대하여, 앞에서 적었듯이 채권자 보호를 가장 앞에 놓고 고려하던 보수적인 회계의 틀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영국과 유사한 회계의 틀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평가규정의 범위 내라는 적법성을 중심으로 한 배당금지규제라는 채권자보호’를 목표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주주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고려하면서 회사에 대한 “사실성 그리고 적정성 시각”을 전달한다’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2. 회계현대화법(BilMoG)

### (1) 의 의

회계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Bilanzrechts: Bilanzrechtsmodernisierungsgesetz: BilMoG)이 2009년 5월 발효되었다. 이

---

(계산)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은 독일 상법 제3편으로 옮겨서 규정되었고 주식법에는 주식회사의 법률형태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대차대조지침법 제3조에 의하여 유한회사법이 개정되었고, 제4조에 의하여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며, 제5조에 의하여 공시법, 제6조에 의하여 공인회사법의 개정, 제7조에 의하여 은행법의 개정 그리고 제8조에 의하여 보험감독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18) 이재실, “EU회계제도의 조화: EU회계지침 수용에 의한 독일과 영국의 국내화 과정과 전망, 유럽연구 2002년 여름(통권 제15호), 151쪽.

하 ‘회계현대화법률’이라고 한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독일 상법의 회계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sup>219)</sup> 또한 상법상 재무제표의 정보공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정을 한 것이다.<sup>220)</sup>

## (2) 개정내용

### 1) 무형자산의 계상

첫째, 무형자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정 전 독일 상법 제248조에 따르면, 회사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자산계정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무형의 자산인 특허권이나 저작권, 노하우 등을 자산계정에 계상하게 되면 과대평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독일은 무형자산에 대하여 회사가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계상에 배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회사 스스로 창출한 무상자산의 경우도 계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221)</sup>

### 2) 이익배당의 제한

회사는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주주 또는 사원이 갖는 이익배당청구권은 설사 전원동의나 초다수결이 있을지라도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제한되어질 수 없는 회사 사원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라 할 것이다.

---

219) Begr. RegE. BT-Druck, 16/10067, S. 34.

220)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최문희, 최근 독일의 회계기준과 주식법 개정 동향, BFL 제46호, 2011. 3, 106쪽 이하.

221) 독일 상법 제248조 제2항 제1문. 동 규정에 따라, 연구 개발(R&D)사업 등이 활성화가 예상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면서 자본이 적은 회사 등에 자본조달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2099년 개정 전과 비교하여 독일 상법 제268조는 큰 변동 없이 제8항을 신설하였다. 제8항은 회사가 창출한 무형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도 이들이 바로 이익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하고 있다. 단지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자산의 부에 계상되더라도, 배당 후에 처분 가능한 준비금이 이익액을 가산하고 손실액을 공제한 후에도 이연법인세(die latenten Steuern)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배당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익배당의 제한은 무형자산 외에도 독일 상법 제274조 제2항의 이연법인세가 계상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익배당의 제한은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상법 제246조 제2항 제3문에 계상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3) 공정가치기준 문제

공정가치기준이라 함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자산가격을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회사의 금융상품과 관련한 사항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상품 역시 공정가치(fairer Wert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상황과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포괄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기준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경우 공정가치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였지만, 모든 회사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독일 상법 제340조e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독일 상법 제340e조는 은행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기관은 주식, 사채, 펀드의 수익권, ‘파생상품을 거래목적으로 보유(Handelsbestand)’한 때에는 장래에 결산기준일의 시장가치, 즉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경제적실질 고찰방식

독일 상법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귀속원칙이 도입되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소유권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재산의 목적물을 소유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 본질적인 기회와 위험을 부담하는가의 판단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귀속시키도록 한다.

독일 상법 제290조는 특별목적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종래 특별목적회사는, 회사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자회사로서 상법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 따르면,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가 특별목적회사(Zweckgesellschaft)의 위험과 기회를 안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관해서도 회사의 재무상태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목적, 회사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의 부속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5) 자기주식과 준비금

회계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에 따라, 이제부터 자기주식은 차변에 계상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소각 또는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을 불문하고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액이나 기타 계산 가능한 가치상당액인 무액면주식을 수권자본에서 차감한다. 자본란에는 ‘액면주식/자기주식’으로 표시된다.

자기주식취득의 액면액만큼 자기주식으로 인한 준비금으로 표시된다. 자기주식취득비용은 이익준비금에서 차감된다. 준비금의 적립의무



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게 되었고, 독일 상법 제272조 제1a조에 따라 자기주식이 자본 항목으로 계상되므로 준비금의 기능이 없게 되었다.<sup>222)</sup> 이제 회사는 취득시점에 기본자본 또는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적립할 준비금을 감소하지 않고도 자기주식취득금액만큼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독일 주식법 역시 다소 변화가 있었다. 특히 독일 주식법 제71조 제2항에서 약간의 개정사항이 있었다.

독일 주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의 환급은 금지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역시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독일 주식법 제71조 제1항). 그러나 회사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제57조 제1항 제1호), 회사와의 근로관계에서나 또는 그 회사와 결합되어 있거나 있었던 자에게 주식이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제2호).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인 법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7조 제2항 제1문). 단지 회사가 개정 전 상법 제272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위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있고, 또 자본금이나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에게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축적된 적립금을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주식법 제71조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제2항에서 다소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개정 주식법은 “im Zeitpunkt des Erwerbs eine Rücklage in Höhe der Aufwendungen für den Erwerb bilden könnt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취득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범위에 해당하는

222) Hüffer, Aktiengesetz, § 71 Rdn. 21a, 9. Aufl., 2010.

적립금을 축적한 경우에는”이라는 의미로써, 결국 회사는 취득시점에 기본자본 또는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적립할 준비금을 감소하지 않고서도 자기주식취득금액만큼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 주식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23)</sup> 반대로 해석하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배당가능이익 재원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회계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결과로 상업장부 규정(제38조 이하)이 삭제되어서 주식회사법, 유한회사법, 협동조합법을 규율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상법전이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주주(shareholders) 보호보다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보호에 방점을 두었었는데 최근 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보호로부터 주주보호 내지 투자자보호로 이동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시강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독일이 은행중심, 대출중심의 재원조달 방식을 전통적으로 고수해 오다가 1980년대말부터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제 자본시장중심으로 이동하여 주식 및 사채 중심의 직접금융을 이용하게 된 기왕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로서의 자본제도는 보수적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예외적으로(제340의e조 제3·4항) 금융기관의 주식, 사채, 펀드의 수익증권, 파생상품 보유/거래목적의 경우 장래 결산기준일 시장가치(공정가치 기준)으로 하고 있다.

---

223) RegBegr. BT0Drucks. 16/10067, S. 66.

## 제 3 절 일본<sup>224)</sup>

### I. 회계제도 개선론

#### 1. 정보공시 강화론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화·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 인하여 일본도 그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일본의 당시 변화의 추이를 종합하면 1970년대 후반 이후, 민간부문의 저축과 관련된 투자의 균형추가 투자초과(자금부족) 상태에서 저축초과(자금잉여) 상태로 대폭 전환되어서, 금융기능 중심인 상대형 금융에서 시장형 금융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6년 10월에 경제심의회 행동계획위원회 워킹 그룹에서 ① 광범위한 경쟁의 실현, ② 자산거래의 자유화, ③ 규제·감독체제의 재검토라는 금융활성화 대책을 세웠다. 이에 근거하여 동년 11월, 당시 수상이던 하시모토(橋本)는 대장대신 및 법무대신에게 2001년까지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을 뉴욕이나 런던에 맞추어 「자유(free), 공정(fair), 글로벌(global)」한 국제금융시장에 조화를 이루도록 금융시스템의 개혁(소위 「일본판 금융 빅뱅」)을 검토하도록 하였다.<sup>225)</sup> 이에 따라 기업 실태가 정확히 표시되는 정보 공시가 긴요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써 회계정보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24) 고재중, “일본의 회계 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5.24 일부전재하여 종합작성함.

225) 「자유시장」이란 잠입·상품·가격 등의 자유화에 의하여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자유로운 시장을, 「공정시장」이란 원칙의 명확화·투명화·투자가보호에 의한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글로벌시장」이란 글로벌화에 대응한 법제도, 회계제도, 감독제도의 정비에 의하여 국제화 시대를 앞서가는 시장을 말한다[古市峰子, “會計制度改革の成果と課題 : この10年を振り返って” 「金融研究」(2008. 8), 56頁].

## 2. 종래 일본의 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은 한 나라의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업회계심의회가 관계 각 방면과 의견을 조정해 회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회계관련 법령에 편입해 가는 형태를 취해왔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상당기간 그러했던 것처럼 일본은 과거 회계전문가로서의 회계사 그룹과 단체가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컨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은 존재하기 힘들었으며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그러한 회계관행을 강제적으로 배양하고자 하였지만, 회계기준에 규범성을 부여하고 그 준수를 의무화하면서 자기발생적으로 나타난 자기규제형태의 회계단체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문법을 제정하는 국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26)</sup>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은 1949년에 기업회계원칙으로 설정된 이후, 상법 개정에 따른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일반원칙, 손익계산서 원칙, 대차대조표 원칙이라는 세가지 형태로 회계기준의 형식을 유지하여왔다. 일본은 각각 상법은 ‘공정한 회계 관행’, 증권거래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그리고 법인세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으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의 감사기준위원회 보고서 제24호 「감사보고」 부록2는 일본의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 예시하고 있다.<sup>227)</sup>

226) 한성기 역/ 하시모토 다카시 저, 「2009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콜로세움, 2008, 69~70쪽.

227) ① 기업회계심의회 또는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회계기준

②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기업회계 적용지침 및 실무 대응 보고

### 3.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일본판 금융 빅뱅 및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조화에 맞추어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 일본 경제의 고성장으로부터 저성장으로의 이행과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의 하락 등에 수반한 이익경영의 한계, 둘째, 금융파생상품에 따른 재무 리스크 관리 실무의 변화, 셋째, 기업재편의 가속·다양화, 넷째, 무형자산을 현금흐름(cash flow) 파악의 주된 원천으로 한 기업의 증가(경제의 소프트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는 일본 회계기준이 기업 재무상태 및 거래 실태를 적절히 공시하는데에 괴리를 보이고,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키게끔 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정비 및 개선이 요구되었다.

## II. 국제회계기준 반영

### 1. 개정전 회계기준 문제점

일본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경제의 후퇴나 버블 경제붕괴후 자산가치의 하락 등에 의하여, 기업에 잠재되어 있는 이익경영의 한계, 기업에 따라서는 유가증권이나 대부금, 유형고정자산을 중심으로 다액의 잠재손해나 대손

③ 일본 공인회계사협회가 공표한 회계제도위원회 등의 실무 지침 및 Q&A

④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실무관행 또는 명확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등에서, 감사인이 경영자가 채용한 회계 방침 및 그 적용방법을 비롯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관해 판단할 때 실무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몇가지(일본 공인회계사협회의 위원회 연구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조세법 등 규정 중 회계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회계에 관한 권위 있는 문헌) 한성기 역/ 하시모토 다카시 저 71쪽.

충당금 부족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산과 관련하여 개정 당시의 회계기준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손익의 다과가 대차대조표상 반영되지 않고 이익이 조작(특히 손실의 유보)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반하여 IAS나 미국 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일부에 시가회계의 도입,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손회계 처리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본도 시가회계 내지 감손회계를 적용하여, 대차대조표상 일시점에 있어서 시가 내지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및 그러한 변동액을 재무무제표상 적절하게 표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둘째로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정보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투자자가 기업그룹 전체의 재무상태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연결의 범위가 형식적 기준(보유주식수)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자회사·관련회사를 이용한 회계조작(구체적으로는 자의적인 연결제외나 손실 누락)의 여지가 많았다. 그런데 IAS나 미국 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재무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자회사·연결회사를 이용한 회계조작을 방지하고 기업그룹 전체의 재무상태를 투자자가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범위의 재검토와 동시에 연결정보를 확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었다.

셋째, 금융파생상품은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의 인식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금리나 환율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손실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기 위한 리스크 관리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기업의 리스크관리의 실태가 회계처리와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되고 기업의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저해한다고 지적되었다. 반면 IAS나 미국회계기준은 금융파생상품에 대하여

시가회계나 위험회피회계<sup>228)</sup>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일본도 금융파생상품 등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정비, 특히 금융파생상품이나 트레이딩(trading)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시가회계의 도입 요청이, 트레이딩 업무를 활발하게 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되었다.

넷째, 금리의 인하 등에 의하여 기업연금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다액의 연금채무가 기업의 재무상태나 업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하나로, 기업연금을 이용한 자산 응용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연금자산의 운용 규제 완화나 확정거출형 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기업연금의 동향이 투자정보나 경영관리정보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연금의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특히 기업이 장래 부담하는 연금채무나 연금자산의 적립 부족에 관한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상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퇴직일시금과 기업연금, 특히 내부적립과 외부적립과의 사이에 회계처리가 달리 행하여져, 퇴직급부제도가 상이한 기업 간의 비교가 곤란하였다. 반면, IAS나 미국회계 기준에서는 종업원의 노동 제공에 수반한 기업은 연금채무가 발생하므로,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채무는 연금자산에서 공제하는 액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기업연금에 관한 기업 재무정보, 특히 「은익채무」로서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기업의 연금채무에 관한 정보를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의 정비를 요구하였다.

---

228) 위험회피회계(헤지회계)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되었으나 파생상품의 일반회계처리로는 위험회피효과를 적절히 재무제표상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생상품 특별회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위험회피회계는 그 성격에 따라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하나 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K-IFRS 제2116호)를 추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섯째,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 이익은 산출된 손익과 현금흐름과의 차이에서 도출되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당시 자금수지표에는 「자금」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하므로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의 흐름의 실태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영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다. 반면 IAS나 미국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부가하여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 표에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영업, 재산, 투자의 3개 부분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일본도 이에 맞추어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여, 발생주회계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성이 높이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sup>229)</sup>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여섯째, 일본은 이른바 트라이앵글체제<sup>230)</sup> 하에서, 세무상의 과세소득계산과 기업회계상의 세인후(税引後) 당기순이익의 계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인후의 이익으로 측정되는 그 기간의 업적이 세제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고,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IAS나 미국회계기준은 세효과회계<sup>231)</sup>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물론 일본도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

229) 예를 들면 발생주의회계로 산출되는 이익(회계이익)에는 「회계발생고(accruals)」가 포함되고, 회계발생고에는 회계방침의 선택, 변경을 통해서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캐쉬 플로우에는 그러한 바이어스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古市峰子, 앞의 글, 60頁 주 12].

230) 트라이앵글체제란 상법, 증권거래법, 법인세법이 3개의 법률에 기초한 회계제도가 각각 상호 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일본 회계제도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예를 들면, 일본 공인회계사회협회(1998) 11-12頁 참조). 물론 상법회계(상법에 기초한 회사의 계산)와 기업회계와의 사이 및 상법회계와 세무회계(법인세법에 기초한 과세소득계산)와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는 것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사이에는 각각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설령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예를 들면, 中里(2000), 鈴木一水(2005) 등).

231) 세효과회계란 기업회계상의 수익·비용과 과세소득계산상의 이익금·손익과의 인식시점이 상이한 경우에 법인세 등의 세비용을 회계상 이익(세인전이익)에 포함하여 기간배분(재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로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은 세제(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밀접한 연결을 차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효과회계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일곱째, 상술한 일본 경제의 후퇴에 수반한 기업경영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기업재편의 가속·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에 관련법제의 정비나 일본판 금융 빅뱅에 의한 규제완화(지주회사의 해금 등)의 요청과 더불어 실무상 애매한 점이 많은 기업재편시의 회계처리의 명확화가 요청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판 금융 빅뱅」 등에 따른 법정비(특히, 2001년 이후 상법개정 및 2005년에 성립한 회사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본금·준비금 제도의 재검토,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에 관한 규제 완화, 종류주식의 다양화, 신주인수권제도의 도입 등)이나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정이 진행되고, 그것에 대응한 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2. 회계기준 변천

재무회계의 목적이라 함은 자금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되는 회계기준은 주요한 자금제공자의 요구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계 빅뱅 이전」, 「현재」, 「가까운 장래」, 특히 「IASB의 목표」에 나누어서 일본의 회계기준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빅뱅 이전	현 재	가까운 장래	IASB
회계관	수익비용 중심관	수익비용중심관 및 자산부채중심관	수익비용중심관 및 자산부채중심관	자산부채 중심관
주요한 기준	기업회계 원칙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기준 및 IFRS	IFRS

	회계빅뱅 이전	현 재	가까운 장래	IASB
회계목적	수익력의 표시	기본은 수익력의 표시	수익력 및 기업가치의 표시	기업가치의 표시
자산의 평가기준	취득원가	일부공정가치	일부공정 가치	완전공정 가치
부채의 평가기준	차입액·장래 지출액	일부공정 가치	일부공정 가치	완정공정 가치
이익의 계산형식	순이익 (가득이익)=수익-비용	순이익= 수익-비용	포괄이익 = 순이익+기타 포괄이익 (평가차액)	포괄이익= 순자산의 증가±자본 거래
이익의 성격	처분가능 이익	기업활동의 성과	기업활동의 성과와 평가손익	기업가치의 증감
정보이용자 (자금제공자)	투자자, 세무당국, 은행 등의 채권자	투자자와 투기자	투자자와 투기자	투기자

※ 투자가로서의 주주 - 주식의 중장기보유, 수익력의 증가에 의한 배당의 증가나 주가의 상승을 기대

※ 투기가로서의 주주 - 주식의 단기보유, 기업 자체가 매매대상, 기업가치의 증가를 기대

### Ⅲ. 회사법상 회계기준 내용

#### 1. 주요 개정내용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회사법상 개정된 내용으로는 회계관행의 위상 변화, 계산서류의 변화, 이익처분안의 폐지와 주주자본등변동계

산서의 도입, 영업보고서 폐지와 사업보고 도입, 개별주기표 도입, 자본의 부의 폐지와 더불어 순자산의 부의 도입,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자본금계상액에 대한 발행가액주의에서 납입가액주의 도입, 자본금 감소액의 상한규제 폐지, 법정준비금 구분 폐지, 법정준비금 감소액 상한 규제 폐지, 임시결산제도 도입, 현물배당 명문화, 잉여금 배당 등 통일적 재원 규제, 순자산에 의한 배당 규제, 건설이자 폐지, 분배 가능액 계산상의 이연자산 등 취급, 설립비용의 처리, 신주발행비의 처리, 대손충당금, 자본의 부의 계수 변동, 손익계산서의 구분, 자회사 등의 표시 단위, 자회사 등의 판정 기준, 연결재무제표도입, 임원상여, 포괄이익,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등을 들 수 있다.

## 2. 회사법과 회계관행의 관계

일본에서 회계관행과 관련하여 종래 상법에서는 「회계장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해석상 공정한 회계관행을 참작할 것(斟酌すべし)」(상법 제32조 제2항)이라고 규정하여 회계관행을 참작하도록 하였다. 반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회사법 제431조)고 규정하여 의무 규정화하였다.

하지만, 회사계산 규칙은 「이 성령의 용어의 해석 및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기타 기업회계의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酌しなければならぬ)」(계산규칙 제3조)라 하여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회계관행의 규정 방법이 참작규정으로 부터 의무규정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법의 회계규정이 개별회계처리상 최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정한 회계관행은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해석상 참작된다고 하는 상대적으로 2차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회사법에서는 이를 의무규정화하였

다. 이는 회사법으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공정한 회계관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정한 회계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예로는 설립비용의 처리 방법, 자산부채의 평가 방법, 신주발행의 처리 방법, 준비금, 이연자산, 조직재편의 처리 방법, 임원의 상여, 준비금의 적립 규정, 포괄이익 등을 들 수 있다.

법률	규정	내용	회계관행		적용되는 방법		적용회사	
회사법	한다	강제 (*1)	회계관행 (*3)	유 (회계관행)	회계기준	원칙법	상장회사	모든회사
	할 수 있다	허용범위 (*2)				원칙법		
						예외법		
				(*4)	특별규정	-		
			무	(*5)	인정되지 않음	-	-	

- \*1) 회사법상, 그 회계처리 방법이 강제된다.
- \*2) 회사법상, 이것은 단순히 임의규정이 아니라, 허용범위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어떠한 회계처리 방법에 의하는가)는 공정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강제된다. 또한 공정한 회계관행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그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 \*3) 회계관행에는 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지침 등이 있다.
- \*4) 중소기업회계지침 등에서 인정하고는 있는 것은 특별법이다.
- \*5) 예를 들어 회사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어도(허용되는 방법이며), 기업회계상 공정한 회계관행이 아니면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IV. 전 망

### 1. 개정방향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이 실행한 회계제도 개선현황으로서 구체적인 조문별 검토에 대해서는 워크숍 자료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sup>232)</sup>

둘째 독일의 개정에 대한 리서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요한 맥락을 어디에서 파악할 것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회사법상 회계 역할과 관련해서, 회사법 회계의 역할이 상당부분 개혁론과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보호의 기능은 후퇴되었다. 이 역시 자본시장에 중점을 두는 변화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시에 대해서는 계산에 관해 공정한 회계관행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배가능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회사법 독자의 관점에서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셋째, 회사법상의 회계규정에 대하여 평가한 점에 대해서는 준수규정, 회사계산규칙 등에 대한 위임 등을 들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 넷째로, 회사법상 회계규정상 문제점은 회계관행의 취급(준수인가 참작인가), 계산서류의 체계, 연결계산서류의 체계, 채권자보호의 내용, 결손전보의 순서 등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제회계기준 및 선진국의 회계기준을 반영하여 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서두른 듯한 감이 있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삼 말할 필요가 없다.

232) 고재중, 앞의 워크숍자료집, 2012.5.24

## 2. 국제회계기준 신중론

일본 금융청을 비롯하여 기업회계기준위원회 및 민관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여 왔고 그 결과 유럽증권규제당국위원회의 ‘기술적 조언’에 일본의 회계기준이 전체적으로 IFRS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자평하기를 일본의 회계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고 질 높은 것이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평가대상국 중 가장 많은 보완조치가 요구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일본의 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안은 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회계제도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있기도 하다는 반응이다.<sup>233)</sup>

지속적으로 유럽연합과의 회계제도 협상에 임하도록 하라는 주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 내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미국과 유럽의 2대 세력이 대치하는 구도에 일본이 파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적인 연계, 협상 및 협조 가능성을 모색하라는 주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sup>234)</sup>

위에서 요약한 일본내에서 관찰되어지는,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대한 반응은 우리도 주의할 사항이다. 한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아직은 그 규모나 품질 모두를 보더라도, 일본을 뛰어넘지는 못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계제도로서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입장 또는 노력해야 할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되새겨 볼만한 시사점이 있다.

233) 한성기 역/ 하시모토 다카시 저, 앞의 책 222쪽.

234) 한성기 역/ 하시모토 다카시 저, 앞의 책 223~225쪽 참조.

## 제 5 장 법제개선방안

### 제 1 절 법령정비 방안

#### I. 정비를 요하는 부분

##### 1. 명칭 불일치

상법은 재무제표의 종류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규정(상법 제447조, 상법시행령 제16조)하고 있는데, 외감법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제외하고는 이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 외감법 부칙(제8조 용어특례규정)으로 해결을 꾀하고 있다.<sup>235)</sup> 그것을 보면 첫째 상법상 대차대조표를 외감법은 재무상태표라 하는 것, 둘째 상법상 손익계산서를 외감법은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라 하는 것, 셋째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라 하는 것에 대해 외감법상 명칭을 밝히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첫째와 둘째는 외감법부칙 제8조에 외감법상 해당 명칭을 상법상 명칭으로 본다고 규정을 두는 형태로 간주 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셋째의 경우 회계기준상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여 불일치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첫째 외감법이 말하는 재무제표의 구체적 유형과 상법과의 불일치, 둘째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고 상법상 이를 이사회 및 정기주총이 승인할 것을 요한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여전히 개별재무제표를 전제로 한 것이 잔존하기 때문에 정비를 요한다고 한다.<sup>236)</sup>

235) 권재열 워크숍발표 90~91쪽

236) 권재열 윗 글 91쪽.

## 2. 재무제표 등 용어 변경

현행 K-IFRS는 종전의 K-GAAP과는 달리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sup>237)</sup> 금융위원회가 IFRS를 도입하면서 IASB의 개념체계를 수용하여 발표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준하여 2009년 개정 외감법은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조항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상법 제447조는 정의 규정이 없어서 불비한 상태인데,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서류가 달라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외감법상의 재무제표와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면 상법 제447조상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고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추가 규정함과 아울러 연결재무제표의 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38)</sup>

## 3.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종래 상법상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를 의미할 뿐이었으나 K-IFRS 도입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로 보아 그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종합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보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에 적는 바와 같이 이사 및 감사의 권한

237)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 「자본시장 Weekly」 제2011-27호(자본시장연구원, 2011), 1쪽.

238) K-IFRS는 기존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대신에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를 쓰기 때문에 발생한 혼동이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용어에 대한 각종 상법 조문들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상세는 권재열 워크숍 발표 92~93, 95·96쪽.



과 의무도 새로이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239)</sup> 즉 외감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종속회사의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명시(외감법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하는데, 이와 같이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단순한 재무제표 종류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감사 등 회사 기관들의 업무범위, 책임 등 기업지배구조에 변화를 초래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상법은 지배회사의 이사 및 감사, 감사위원회는 종속회사의 회계정보시스템 및 내부통제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정보제출요구 내지 조사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감법 제6조의2 와 유사한 내용(이사·감사의 정보 접근권)이 상법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정보접근권을 상법상 규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심사숙고할 내용들이 있는데, 예컨대 첫째로 큰 회사가 작은 회사가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 지분권행사를 초과하는 결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한할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둘째로 상법에 조항을 설치할 경우 외감법 조항은 병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검토되어질 수 있다.

#### 4.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등 기한 연장 검토

상법은 재무제표등의 제출에 대하여 이사로 하여금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상법 제447조의3)할 것과 감사는 그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상법 제447조의4)할 것을 정하고 있다. 외감법은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부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4주간 전으로 정(외감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6조 제2호 가목)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별

239) 권재열 워크숍발표 97쪽 이하.

도재무제표와 동일한 정기주주총회회의일의 1주간 전으로 통일하여 규정 (외감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후 이를 집계하여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기간 확보와 외감법과의 통일성 등을 생각해 볼 때 상법과 외감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히 재무제표와의 균형을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도 감사의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으로 두어야 한다.<sup>240)</sup> 재무제표 등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실무상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작성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서, 특히 실무상 회계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 제 2 절 맺음말

주지하다시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복잡한 회계기준이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의 작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갖고자 하여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국제회계기준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란 이름아래 그에 흐름을 같이하게 되었다. 2010년 중반을 기준으로 117개국이 IFRS를 채택하였다는 사실이 IFRS 채택을 외면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적,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예컨대 재정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의 기부, 전자DB 구독, 출판물

240) 최준선·김춘, “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개정상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성균관법학(제2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2011, 368쪽. (권재열 워크숍발표 102쪽 재인용).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국제적인 대형회계법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세계적인 재정위기의 와중에 IASB가 EU의 압력으로 2008년 10월 금융상품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전력 그리고 그 이후에도 EU가 IFRS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IASB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사례들이 있어서, 국제회계기준IFRS로의 전환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한다.<sup>241)</sup> 이러한 의문을 던져 준 논자는 그에 비해서 미국 재무회계처리기준위원회(FASB)는 인적 독립성 뿐만 아니라 재정적 독립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IASB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IASB가 무의식중에 EU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IFRS 채택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묻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도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로서 활동하는 회계기준원의 인적인 독립성과 물적·재정적인 독립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2002년 Sarbanes-Oxley 법 제 108조(a) 및 1933년 증권법 제19조(b)에 따라 연방증권규제법상 ‘일반적으로 수용되는(generally accepted)’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의 자격요건으로서 ‘그 위원의 다수가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명목상의 독립은 실질적인 중립적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한국에 있어서 자율규제기관(SRO: Self Regulation Organization)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함으로 인하여 정부개입을 초래 또는 필요로 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이런 점에서 기업회계기준원에 대한 독립성의 요청은 타당하며 인적 독립성 뿐 아니라 물적 또는 재정적 독립성이 절실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의 기업공시의 기

241)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워크숍자료집 35쪽 참조.

준이 되는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관이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당위와도 연결되는 작지 않은 문제이다.

다음으로 바로 이러한 IASB가 EU의 이익에 먼저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으로 인하여, 한국이 회계(기준을 설정할) 주권을 포기하고 IFRS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조치가 적절한지 숙고 또는 재고할 필요를 낳는다. EU가 채택한 방식과 같이 개별적인 기준서를 승인(endorsement)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또는 일본이 최근 그와 같은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논자의 견지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주로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수렴(convergences)은 자국의 기존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채택(adoption)은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기존 회계기준을 포기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대치하여 채택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택한 방식인 승인(endorsement)은 각 회원국별로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선택적으로 하면서 그 수용의 정도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채택을 한 뒤이긴 하지만 적어도 IFRS 규범 형성에 한국기업 등의 현실에 적절하거나 편리할 수 있는 규범 창조 내지 삽입을 위한 노력을 요한다.

## 참고문헌

- 고재중, “일본의 회계 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2.5.24.
- 권재열, “개정상법 제466조의2의 의의”,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1.
- \_\_\_\_\_ 외 3인,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연구」, 법무부용역보고서, 2011.10.
- \_\_\_\_\_,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에 대한 토론문, 2012.8.29.
- \_\_\_\_\_, “K-IFRS의 도입에 따른 상법과 외감법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2012.5.17)
- 금융감독원,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사례와 시사점, 2010.
- 기업회계기준 2011.12.23. 개정
- 김건식, 「자본시장법(제2판)」, 두성사, 2010.
- \_\_\_\_\_ · 박정훈 · 이창희,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에 대한 의견」, 한국회계기준원 용역보고서 (2003.4.)
- 김광윤, “최근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회계저널」 제15권 제4호(한국회계학회, 2006.)
- 김노창 · 권성수 · 심태섭, “국제회계기준의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
- 김두진,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에 대한 토론문”,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2012.8.29.)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 (중)」, 전정신판, 박영사, 2009.

참 고 문 헌

- 김희준, “개정상법 회계관련 규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의 비교 연구”, 「상사법연구(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 박영도·김수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사법연수원, 「EU법」, 사법연수원, 2007.
- 신현윤, 「경제법(제4판)」, 법문사, 2011.
- 양기진,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사법의 정립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업법 정합성」, 2012.5.
- \_\_\_\_\_, “개정상법과 K-IFRS의 조화 모색”, 「상사법연구」 제30권 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8.)
- \_\_\_\_\_, “무액면주식의 도입 관련 회사법상 쟁점 연구,” 국내학술대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3.23.
- 오수근, “회계규범 입법론”, 「상장협연구」 제53호, 2006.
- \_\_\_\_\_, “회계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상사법연구」 제18권 제3호, 2000.
- 유주선, “독일 상법상 기업회계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2.5.25.
-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회계저널(제6권 제2호)」, 1997.
- 이재실, “EU회계제도의 조화: EU회계지침 수용에 의한 독일과 영국의 국내화 과정과 전망, 유럽연구 2002년 여름(통권 제15호)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제11판)」, 박영사, 2012, 228쪽
-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제5판)」, 박영사, 2009.

- 임석식 외 2인,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한국회계학회, 2009.)
- 자본시장연구원,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 「자본시장 Weekly」 제2011-27호, 2011.
- 정상근, 유럽회계제도의 변화와 독일상법회계의 특성, 「상사판례연구 (제13권)」, 2002.
- 정운오 외 3인, 「IFRS 중급회계」(제2판), 경문사, 2009.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 \_\_\_\_\_ · 도제문, 「은행법(제2판)」, 박영사, 2005.
- 조근제 · 노직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3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8)
- 채홍기,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최근 독일 대차대조표준칙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8.
- 최준선 · 김춘, “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개정상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성균관법학(제2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2011.
- 표영인/김평기/이운원/최종윤, 「IFRS 중급회계(I)」, 제3판, 명경사, 2011.
- 하시모토 다카시 저(한성기 역), 「2009 국제회계기준 대전쟁」, 콜로세움, 2008.
- 황남석,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2.5.17
- \_\_\_\_\_, “미국기업회계기준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2.8.29.
- 황운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참 고 문 헌

한국은행, 「조문별해설 한국은행법」, 2000.

한국증권법학회,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과 관련한 법  
규정의 문제점」 2006.12.

古市峰子, “会計制度改革の成果と課題 : この10年を振り返って” 「金  
融研究」 2008.8.

近藤光男, 「商法總則・商行為(第5版補正版)」, 有斐閣, 2008.

服部榮三, 商法總則(濟3版), 青林書院新社, 1983.

平出慶道, 「商行為法」, 青林書院新社, 1980.

Acevedo, “The Fox and the Ostrich: Is GAAP a Game of Winks and  
Nods?”, 12 Transactions: Tenn. J. Bus. L. 63 (2010)

Barry J. Epstein, “The Economic Effects of IFRS Adoption,” The CPA  
Journal Mar. 2009.

Bernstein, “The Concept of Materiality”, 42 The Accounting Review 86.  
1967.

Bratton, “Heedless Globalism: The SEC’s Roadmap to Accounting  
Convergence”, 79 U. Cin. L. Rev. 471 (2010).

Chewning Jr./ Higgs, “What Does ‘Materiality’ Really Mean?”, 13 J.  
Corp. Acct. Fin. 61 (2002).

Committee on Corporate Laws,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notated, 4. ed., 2008.

Creifelds, Rechtswörterbuch, 2000



Final Report on Work Plan for Global Accounting Standards.

(<http://www.sec.gov/news/press/2012/2012-135.htm>)

Graham/Carmichael, Accountants' Handbook: Vol. 1, 12.ed., 2012.

Herwitz/Barrett, Accounting for Lawyers, 4.ed., 2006.

Herwitz/Barrett, Accounting for Lawyers: 2011 Supplement, 2011.

헌재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7474 판결